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1031-000002233517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기업 특성에 따른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 차이에 관한 연구

201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이 종 용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기업 특성에 따른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 차이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정 윤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이 종 용

이종용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2월

주 심 경제학박사 하 명 신 (인)

위 원 경제학박사 김 철 수 (인)

위 원 지리학박사 이 정 윤 (인)

< 국 문 초 록 >

수출 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1975년부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EU, 미국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의 징수 및 환급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환급제도는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두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원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제도와 관련 연구들은 경제적 효과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문헌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관세환급 중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환급제도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에 따른 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 및 활용의지에 대해 총 14개 요인을 구분하여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여부에 따라 총 12개의 기업 특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개별환급업체는 환급제도를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제도의 만족도 및 특성에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만족도와 자금부담에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사용이 활발하고 미활용 기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셋째,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의지는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으로 자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개별환급제도의 자금부담 경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자금부담을 느끼는 개별환급제도 활용 기업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이 늘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표 목차 ····· vi
그림 목차 ····· viii
ABSTRACT ····· ix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배경 ····· 5
제1절 관세환급제도 ····· 5
2.1.1 세계의 관세환급제도 ····· 5
2.1.2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 ····· 7

제2절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 12
2.2.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 12
2.2.2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 14

제3절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특징 비교 ····· 15

제4절 개별환급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18
2.4.1 개별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18
2.4.2 개별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

제5절 개별환급제도 만족도 및 특성의 정의에 관한 연구 ····· 23
2.5.1 만족도 ····· 24
2.5.2 자금부담 ····· 24
2.5.3 작성부담 ····· 25
2.5.4 처리편리 ····· 25
2.5.5 업무신속 ····· 26
2.5.6 심사부담 ····· 26
2.5.7 보관부담 ····· 27
2.5.8 가격경쟁력 ····· 29

제3장 관세환급과 FTA 특혜관세 수입 현황 ····· 30
제1절 관세환급 현황 ····· 30
3.1.1 수입징수 실적 ····· 30
3.1.2 관세환급 실적 ····· 32

제2절 FTA 특혜관세 수입 현황 ····· 35
3.2.1 FTA 특혜관세 수입 실적 ····· 35
3.2.2 FTA 특혜관세 수출입 활용률 ····· 36

제4장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수입제도 분석 ····· 38
제1절 설문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 38
4.1.1 설문 작성개요 ····· 38
4.1.2 설문 조사방법 ····· 40
4.1.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40

제2절 개별환급제도 분석 ····· 42
4.2.1 개별환급제도 활용 기업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 ····· 42
4.2.2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요인별 집단의 인식 차이 ····· 47
4.2.3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상반된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요인 ····· 58
4.2.4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간 상관관계 분석 ····· 61

제3절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분석 ····· 62
4.3.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 특성의 차이 ·· 62
4.3.2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두 제도의 활용의지 비교 ·· 66
4.3.3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이유 ····· 67
4.3.4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미활용 이유 ····· 68

제5장 결론 ····· 7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73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76

참고문헌 ····· 77

부록 ····· 80
<부록 1> 설문지 ····· 80

표 목 차

<표 2-1> 2014년 기준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협정별 관세환급규정 ····· 6
<표 2-2>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의 특징 비교 ····· 11
<표 2-3>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별 수입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13
<표 2-4>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특징 비교 ····· 17
<표 2-5> 개별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관련 주요 선행 연구 ····· 20
<표 2-6> 개별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주요 선행 연구 ····· 22
<표 2-7> 개별환급제도 만족도 및 특성의 정의에 대한 주요 연구 ····· 23
<표 2-8> 관세환급액 및 과다환급 추징 실적(2005~2013) ····· 27
<표 2-9> 환급신청 관련 서류 및 보관기간 ····· 28
<표 3-1> 관세 및 부과세 징수 실적과 비중 변화(2004~2014) ····· 31
<표 3-2>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중 변화(2004~2014) ····· 34
<표 3-3> 대 FTA 협정국 총 수입액 대비 협정관세 적용 실적(2008~2013) ··· 35
<표 3-4> FTA 협정별 수출 활용률(2005~2014) ····· 36
<표 3-5> FTA 협정별 수입 활용률(2005~2014) ····· 37
<표 4-1> 집단구분을 위한 요인별 분류 기준 ····· 39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지역, 수출품목, 수입국, FTA 특혜수입 여부) ·· 41
<표 4-3> 개별환급제도 만족도, 특성 및 활용의지에 대한 측정 내용 및 기준 ·· 42
<표 4-4> 개별환급제도 활용 기업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 ····· 43
<표 4-5>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요인별 집단의 T검정 결과 ····· 45
<표 4-6>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요인별 집단의 인식 차이 ····· 46
<표 4-7>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특성 간의 상관관계 ····· 61
<표 4-8>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T검정 결과 ·· 63
<표 4-9>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기업 특성 차이 ·· 64

<표 4-10>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개별환급 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의지 비교 ····· 66
<표 4-1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 ····· 67
<표 4-12>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이해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 69
<표 4-13>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추가 비용에 대한 응답결과 ····· 70
<표 4-14>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추가 업무에 대한 응답결과 ····· 71
<표 4-15>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검증 부담에 대한 응답결과 ····· 72

그 림 목 차

<그림 2-1> 관세환급 성립요건 및 절차 ····· 10
<그림 3-1> 우리나라 총 수출입 및 원자재 수입 추이(2004~2014) ····· 30
<그림 3-2> 관세환급방법에 따른 환급액 추이(2004~2014) ····· 32
<그림 3-3> 관세환급방법에 따른 환급업체수 추이(2004~2014) ····· 33
<그림 4-1> 종업원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47
<그림 4-2> 매출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49
<그림 4-3> 구매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0
<그림 4-4> 수출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1
<그림 4-5> 수입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2
<그림 4-6> 환급경력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3
<그림 4-7> 환급방식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4
<그림 4-8> 연간 관세납부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5
<그림 4-9> 연간 환급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7
<그림 4-10> 환급률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 58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Drawback System and the Differences of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by Firm Characteristics

Lee, Jong-Yo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ustoms refund system is to return duties after export which is imposed on imported raw materials for export product. And it has been utilized as major export support policies since 1975. There were opinions that the Customs refund system was expected to shrink because FTA has took into effect with huge economies such as ASEAN, EU, US and so on Since Korea-Chile FTA in 2004. However, the customs refund system is still being utilized actively and expected to be used as a valuable export support policy with FTA in the future.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ustoms refund system have achieved the mainstream to explore the improvement of the issues together with economic impact. Most of it has been conducted by literature survey or study with second statistical data. However, this study is a big difference in analyzing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drawback system and the opinion of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empirically by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import-export companies utilized the individual drawback system.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perception difference on the satisfaction of the individual drawback system between the group an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of

companies on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I studied th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which is divided into a total of 14 factor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of 12 factors depending on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import system or not.

The princip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drawback company had the volition to use continuously but it has perception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feature by firm characteristics. Especially, it had the conflicting perceptions between the groups for the satisfaction and the financial burden of the customs refund system. Second, large enterprises utilize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actively, while utilization of small companies were low relatively. Third, there were not a difference in utilizing volition of the customs refund system but there were a difference in utilizing voli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depending on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or not. Lastly, the financial burden of companies was reduced by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If some of them utilizing customs refund system have financial burden, the financial burden is expected to reduce by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utilization opinion of new system depending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by analyzing the satisfaction of customs refund system and the utilization opin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in the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export companies and various policies that support it in the future.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한 후 제조·가공을 통해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정부는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사전면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70년대 우리나라의 원재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입하던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과 수출 지원을 위해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였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이 완료된 후 납부하였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써 환급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기업의 자금 운영에 부담을 주지만, 관세의 환급을 통해 수출제품 단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유용한 수출지원 정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 EU,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와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추진 해 오고 있다.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FTA 협정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관세 등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조원가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FTA 활용이 늘어날수록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액은 점차 감소될 것이며, 관세환급액도 감소되어 관세환급제도의 활용도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과 각 기업의 상황과 여건

에 따라 그 활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관세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모두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지원에 중요한 제도로써 계속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관세환급제도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와 과다 및 과소환급 등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되면서 FTA 확대로 인한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1년 한-EU FTA 전·후로 FTA 체제하의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와 2차 자료를 활용한 경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환급제도 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급제도 만족도와 특성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 차이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 특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FTA의 확대에 따른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중 개별환급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으며, 개별환급은 수입한 원재료의 세액에 대해 수출물품에 사용된 만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WTO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의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실적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 이나 국내산 원재료를 환급 받는 등의 제도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완전철폐를 기준으로 관세가 전부 면세가 되지만 간이정액환급업체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재완(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은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세금보다 환급 받는 세금이 많아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WTO 규정에서의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실제로 납부한 세금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가 환급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은 제도를 분석해 보면 개별환급의 경우보다 많은 환급액이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윤기관(2001)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WTO의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음에도 수출상품이 부담한 관세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품목별 개별환급실적을 근거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모든 수출품목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진행하는 현행 제도는 WTO 수출 보조금의 논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간이정액환급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WTO에서 인정하는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별환급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PSS 18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 별로 나누었다.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특성의 집단 간 인식 차이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의 특성 차이에 대해 T 검정을 실시하고, FTA 활용과 미활용 이유에 대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 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별환급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제3장은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현황, 제4장에서는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 특성에 대한 인식차이와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에 대한 기업 특성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 및 연구의 성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관세환급제도

2.1.1 세계의 관세환급제도

(1) WTO 협정에서의 관세환급제도

WTO 체제에서는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1]에 의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 혹은 가격 및 소득지지로 인하여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수출 혹은 수입대체 등의 금지 보조금이나 기타 보조금은 1994년에 체결된 보조금과 상계관세협정(SCM)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GATT 16조[2]에서는 국내소비용 동종 상품이 부담하는 관세 등 제세금의 면제 혹은 당초 납부 시 발생한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품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하는 관행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WTO 보조금 협정 주 1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세환급제도는 WTO에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 부속서 Ⅱ (생산과

1) 1994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2) GATT Article XVI : The exemption of an exported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or the remission of such duties or taxes in amounts not in excess of those which have accrued.

정에서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정상적 손모량 포함)를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 투입요소에 실제로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교토협약(특별부속서 F 이행지침)에서는 수출물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 물품,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또는 수출물품에 포함된 물품,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시 납부된 관세 및 제세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는 관세환급은 수입 시 납부하였던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품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금의 환급은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FTA 협정별 관세환급 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우 관세환급에 대해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협정상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보조금 및 상계에 관한 조항은 WTO 협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즉, WTO 에서도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를 보조금이 아닌 수출지원제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표 2-1> 2014년 기준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협정별 관세환급규정

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관세환급규정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5년후 제한가능	언급없음	언급없음	5년후 검토가능	언급없음	언급없음

출처 :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반면에, EU 및 터키와의 FTA 협정에서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4조의 관세환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환급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FTA 체결 후 제3국 부품 사용이 크게 증가되어 수출품 원재료 조달방식이 FTA 체결 전과 비교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발동 가능하며 최종재 수출, 부품 수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측 간 협의 후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견이 있으면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발동될 경우 환급금 전체를 금지하지 않고 일정 한도(약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동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2.1.2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1) 관세환급의 정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 에 의한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나눌 수 있다. 관세법상 환급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때 돌려받는 과오납 환급[3]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 하여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국내에서 폐기할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계약상이 물품 환급[4]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상[5]의 관세환급을 말하며, 수출물품에 대

3) 관세법 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4) 관세법 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

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WTO에서 인정하는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그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할 경우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관세환급제도의 도입

1961년부터 수출지원을 위하여 관세제도상 이용된 것은 사전면세제도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1년 이내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세한 다음, 동 원재료를 1년 이내에 수출하면 수입 시 면세한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시 면세한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1970년대 무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국내 가공산업의 발달에 따라 면세로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여러 단계의 제조·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면세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면세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의 사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 7월 1일부터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하였다.[6)]

(3) 관세환급의 목적[7)]

관세환급제도는 환급특례법에서 다음 두 가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능률적인 수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비용은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수출제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 따라서 관세환급을 통해 제조원가를 낮춤으로써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 된다. 박현희(2011)와 이서영(2007)

6) **관세환급(민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저. 201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12-13.
7) 환급특례법 제1조 (목적).

은 관세환급액이 많을수록 수출이 증가하며 관세환급이 수출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정부의 수출지원수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업체는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이후 관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금융비용과 환급신청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수출업체들이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입원재료 보다 국산원재료를 사용하는 국산화를 촉진시켜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재호·이명헌(2002)은 수출업체는 대체 가능한 국산원재료가 있다면 환급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선호하게 되어 원재료의 국산화가 촉진되며, 특히, 정액환급제도는 납부한 관세액과 상관없이 수출물품별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므로 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제도 아래 합법적으로 과다환급을 받을 수 있어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4) 관세환급의 성립요건 및 절차

관세환급의 성립요건으로 첫째,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이행기간 2년 이내에 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되어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8)]

8)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 (환급대상 수출 등), 제9조 (관세 등의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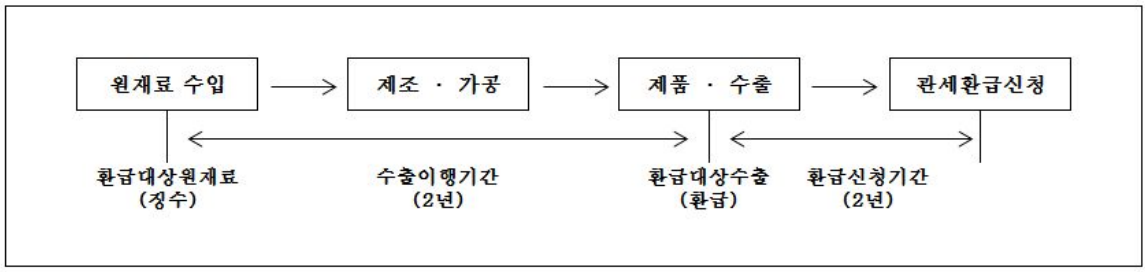

<그림 2-1> 관세환급의 성립요건 및 절차[9)]

(5) 관세환급 방법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개별환급은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원재료 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직접 산출한다는 점에서 정액환급과 구분된다. 즉, 수출 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확인·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생산에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이들 중에서 수입원재료의 납부관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환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써, 환급액 산출 시(내국신용장 등 국내거래서류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시 포함)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의 단점인 복잡성과 과도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줄이고 소규모 수출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 대상은 중소기업기본

9)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업체이다. 간이정액환급은 평균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과소 또는 과다 환급의 문제가 존재하고 수출에 이용된 원재료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WTO의 보조금 제도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가가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해 운영되지만, 관세환급 본래의 취지인 납부된 세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금액 당 고시금액을 환급해 주므로 국내자재를 대부분 사용하는 등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 이상의 환급액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시점에서 되돌려 준다는 관세환급의 취지에 기초할 때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간이정액환급방법보다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의 특징 비교

구분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대상	중소기업	모든 기업
이용업체수 비중	약 60%	약 40%
환급액	환급액 적음 (6억 원 이하)	제한 없음
환급액 비중	약 6%	약 94%
환급 신청 업무	간편, 행정비용 少	복잡, 행정비용 多
업무 처리	대부분 관세사 위탁	관세사 위탁 / 사내 담당자
품목	품목수 제한 (2014년, 4,260개)	제한 없음
문제점	과다환급으로 보조금 위반 발생 가능	증명의 복잡성과 행정비용 발생

출처 : 정재호·강성훈(2014).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2절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2.2.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보다 작거나 무관세로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수입 통관 당시 또는 수입 후 1년 이내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FTA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10]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 FTA 발효로 인해 협정에 명시된 양허안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11]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협정관세).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표 2-3>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별 수입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순위	관련법	관세의 종류	우선 적용 원칙
1	관세법 제50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덤핑방지,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가장 우선 적용
2	FTA 특례법 제5조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3~7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관세법 제73조, 제74조	WTO 양허관세, WTO 개도국간의 양허관세, 아·태협정양허관세(APTA),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GSTP),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4~7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WTO 일반양허관세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아·태협정양허관세(녹차의일반양허관세)	6,7보다 우선하여 적용 4,5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4	관세법 제61조, 제71조, 제72조	조정관세, 계절관세	5,6,7보다 우선적용
		할당관세	5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6,7보다 우선적용
5	관세법 제76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GSP)	6,7보다 우선적용
6	관세법 제50조	잠정관세	7보다 우선적용
7	관세법 제50조	기본관세	

출처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2.2.2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FTA 특혜관세는 수입자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원산지증명서의 미입수 등으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12)]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은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신청인 사후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하다. 이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입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FTA 협정을 체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둘째, FTA 협정국 물품임을 원산지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셋째, 원산지국으로부터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3절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특징 비교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관련 법 및 목적에 차이가 있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제도이다. 하지만 수출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보면, 개별환급제도는 수출 후 관세를 환급 받고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수입 시 관세가 면세 되거나 낮아지게 되어, 두 제도 모두 제조원가를 낮추는 혜택을 통해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내수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두 제도가 정책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제도의 특징에 대해 <표 2-4>와 같이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첫째, 개별환급제도의 경우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FTA 협정국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환급제도의 환급액 산출은 수출된 물품의 정보와 관련된 서류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액 산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양 국가 간 합의된 FTA 협정문 상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므로 적용에 어려움을 적게 느낄 수 있다.

둘째, 관세의 납부 여부 및 신청기간이다. 개별환급제도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당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통해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만큼 환급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협정관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입 당시 신청을 통해 면세 되거나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수입 후 1년 이내 신청을 통해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셋째, 신청인과 증명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개별환급제도의 경우 신청인과 증명의 주체 모두 수출자나 제조자로 동일하나, FTA 특혜관세 수입

제도의 경우 신청인은 수입자이고 증명의 주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인 상대국 수출자로 상이하다. 따라서 사후 검증에 대한 대응에 있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원활하지 않아 검증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의 징수는 개별환급제도에서 소요량 계산의 오류로 인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에 대해 징수하며 이는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자의 오류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므로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검증을 통해 원산지가 부인이 되었거나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될 경우 징수하며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자가 아닌 상대국 수출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여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예방하기가 어렵다.

이렇듯 차이점이 많은 두 제도이지만, 관세 절감을 통해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개별환급업체의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으로 환급되지 않는 내수 물품에 대한 관세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FTA 협정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되어 특혜관세에 대한 추징 시 개별환급제도의 추가환급을 통해 그 추징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제도가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표 2-4>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특징 비교

구 분	개별환급제도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목적	● 능률적인 수출 지원 ● 균형 있는 산업발전	●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대 상	●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	● FTA 협정국의 수입품
산출방법	● 소요량 계산	● 협정관세율
산출근거자료	●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 원재료 / 제품 / 부산물 수불대장 ● 소요량계산서철 등	● 원산지 증명서
관세납부	● 발생 (납부 후 환급)	● 면세 (납부 X) 또는 일부 납부
신청기간	● 수출신고수리 후 2년 이내	● 수입신고수리 시(사전) ●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사후)
신청인	● 수출자, 제조자	● 수입자
증명주체	● 수출자, 제조자	● 상대국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신청서류	● 환급신청서 ● 수출서류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처리방식	● P/L (paperless)	● P/L (paperless)
처리기간	● 3일 이내	● 3일 이내
제출서류 (요구 시)	● 환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 소요량 계산서류 ●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직접운송관련 서류(B/L) ● 원산지 증빙서류
서류보관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 처벌	● 행위자 처벌	● 양벌규정 (행위자, 회사)
제한	● 대통령령으로 가능 (국산원재료 사용 촉진 시)	● 대통령령으로 가능 (긴급관세조치 / 차후 상대국에 보상)
징수	● 과다환급 시	● 원산지, 직접운송 불충족 시
검증	● 사후 심사 (5년 이내)	● 사후 심사 (5년 이내)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서면조사 / 현지조사
조사대상	● 신청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조사내용	● 소요량	● 원산지
회계처리(관세)	● 납부 시 매입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에 포함 후 환급 시 매출원가에서 제외	● 발생하지 않음
회계처리 (부가세)	● 관세납부액 포함 부가세 발생	● 관세 제외된 제품금액에 부가세
수익성 영향	● 원가에 반영 후 회수 시 차감하므로 회수액에 따라 변동	● 관세납부액이 없으므로 원가가 고정
단가산정	● 일반적으로 일부 포함	● 관세 제외한 단가산정
사후조치	● 해당 건에 대한 징수 및 과태료	● 검증기간 협정관세 적용보류 ● 검증부인 시 관련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추징 및 과태료
교육환경(기회)	● 관련 무료 거의 없음 (대부분 유료)	● 관련 교육 다수 (무료교육)
관리 인력	● 회사 규모에 따라 담당자 유무 ● 관세사 이용	● 수입담당자 / 관세사

출처 : 환급특례법 및 FTA 이행 특례법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4절 개별환급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2.4.1 개별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관세환급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수출 지원 및 해외 원재료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제도가 수출 증대와 원재료의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가 되고 있다.

손계성·최창환(2012)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기별 수출공급, 관세환급액, 수출상대가격, 국내수요압력, 실질실효환율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관세환급액이 많을수록 수출공급이 증가하였다. 중국은 관세환급액이 많을수록 수출공급이 증가하고 위안화 절상 시 수출이 감소하며 실업률 상승에 따라 국내수요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관세환급의 신청을 원활하게 하고 중국과 FTA 협상 시 관세환급 등 수출지원정책의 철폐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서영(2012)은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수출 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해 2002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수출공급함수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관세환급은 수출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며 명백한 효과를 보인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장근호(2012)는 관세환급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FTA가 발효되면 EU 시장에서 관세 차원의 경쟁력은 관세부담이 전혀 없는 우리 수출품에 이어 중간재세 부담이 있는 EU산 물품 그리고 제3국 물품의 순으로 이들 제도의 상호 작용이 수출부문으로 자원을 유도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관세환급제도

가 금지되면 생산업체는 어느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든지 우리나라 제품이 EU 산 물품이나 제3국 물품에 비하여 환급이 존속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우리나라 등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국은 불완전한 FTA 체제에서는 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현희(2011)는 2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공급함수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환급액이 많을수록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관세환급이 수출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가격은 수출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현희(2010)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대상으로 수출수요함수와 수출가격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관세환급액이 많아질수록 수출가격을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는 부의 부호가 나왔고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관세환급이 수출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지원제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서영(2007)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간 자료로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관세환급액은 많을수록 수출공급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지원정책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해범(2007)은 수출용 원재료의 국산 비율이 낮을 경우 관세 부과로 국내가격이 상승하며 국내소비가 관세부과 전보다 감소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간접적 수출효과가 있다. 국산 비율이 높을 경우 반대로 국내소비가 증가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산업의 보호효과가 나타나나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자원을 낭비하므로 수출지원에는 관세환급제도가 기여

하지만 원재료의 국산화에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2-5> 개별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관련 주요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손계성 최창환 (2012)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분기별 수출공급, 관세환급액, 수출상대가격, 국내수요압력, 실질실효환율 자료를 이용해서 일반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다중 회귀 분석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서영(2012)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수출 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해 2002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실증분석
장근호 (2012)	한-EU FTA의 환급 세이프가드 규정을 WTO 협약 등과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가 관세환급제도와 상호 작용할 경우 국내외 물품의 경쟁조건 혹은 보호효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
박현희 (2011)	수출공급함수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
박현희 (2010)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대상으로 수출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의 정도(탄력성)를 도입하여 관세환급액이 많아질수록 수출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수출수요함수와 수출가격함수를 사용하여 분석
이서영 (2007)	관세환급액은 관세환급액이 많을수록 수출공급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지원정책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
최해범 (2007)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함수모형으로 가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관세환급제도와 국내후생과의 관계를 통해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2.4.2 개별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지원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보니, 문헌연구나 통계자료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운영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기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정재완(2011)은 법령과 문헌 그리고 통계자료를 통해 수출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액 결정에서 개별환급의 환급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정부 및 수출업체의 대응전략을 다루었다. 분석 결과 과다 및 과소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환급 대책으로 평균세액증명제도의 개선과 과소환급은 일괄환급신청원칙의 완화와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분에 대한 양도세액증명에서 간이정액 결정방법의 적용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이고 환급액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납부세액의 최소화와 선택적 조달, 국내 원재료공급자와 긴밀한 협력, 소요량 산정 방법과 납세사실 증빙서류의 기술적 선택을 제시하였다.

장근호(2010)는 FTA의 확산에 따라 현행 환급제도에서는 제3국 물품이 무임승차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외국산 원재료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내수산업이 보호의 역전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하며 FTA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으므로 관세환급제도를 점차 축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점규(2009)는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기업과 정부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환급신청을 관할지가 아닌 어느 세관에서나 신청 가능하면 행정절차 간소, 효율, 시간 및 인력이 절약 가능할 것이고, 정부는 수출산업 지원에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대체환급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옥·성남길(2007)은 신속한 관세환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관세환급금 지급절차 및 심사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환급제도는 편리성과 신속한 환급액 지급을 위해 전산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전산심사로 환급액의 정당 여부와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따라서 환급금을 지급한 후 심사를 통한 환급액 추징으로 인해 신청

인의 가산세 부담 발생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세관심사담당공무원의 환급 심사를 강화하고 소요량 계산서 자동 계산 및 내역을 세관에 송신할 수 있는 환급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보았다.

송선옥(2005)은 미국 관세환급제도 및 개정교토협약의 환급관련 규정과 한국 관세환급제도를 문헌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으로 환급청구기간과 환급청구인의 제한과 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다 및 부정환급 등의 환급금 관리를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환급기간을 확대하고 간이정액환급의 환급청구인 제한을 완화하여 환급범위를 확대하여 관세환급의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관세환급법규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 확대를 제도화 하여, 효과적인 환급금 관리 및 환급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2-6> 개별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주요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정재완 (2011b)	관련 법령과 문헌, 그리고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통해 물품의 수출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액 결정에서 주로 적용되는 개별환급에서 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정부 및 수출업체의 대응전략을 연구
장근호 (2010)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른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유예제도를 도입방안으로 검토
박점규 (2009)	관세환급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고 제시
이상옥 성남길 (2007)	신속한 관세환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관세환급금 지급절차 및 심사제도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
송선욱 (2005)	미국 관세환급제도 및 개정 교토협약의 환급관련 규정과 한국 관세환급제도를 문헌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

제5절 개별환급제도 만족도 및 특성의 정의에 관한 연구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자료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에 대해 <표 2-7>과 같이 정의 하였다.

<표 2-7> 개별환급제도 만족도 및 특성의 정의에 대한 주요 연구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만족도		이재길 (2005)	· 제도형성, 제도운영, 운영결과가 만족도에 정(+)의 영향 · 종합만족도는 공무원과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간 차이 없음
특성	자금 부담	박점규 (2009)	· 환급기간의 소요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 · 관세환급제도의 목적인 수출지원효과 저해 가능
		이재길 (2005)	· 수출용 원재료 수입 및 납부에서 환급까지 장기간 소요 · 금융 및 사회적 비용 등 비용 범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작성 부담	박점규 (2009)	·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상당히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 · 불필요한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
		이재길 (2005)	· 신청서류의 작성 및 구비가 곤란 ·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련서류의 구비 미흡으로 환급을 포기
	처리 편리	이상옥 성남길 (2007)	· 2003년 7월 1일부 서류제출 없이 환급신청 및 지급 가능 · 환급금 지급이 신속화
	업무 신속	이상옥 성남길 (2007)	· 환급금은 환급 신청 접수 후 신속하게 심사 후 지급 결정 · P/L 신고되어 당일 결정, 당일 지급되며, 늦어도 하루 후 환급금 지급 진행
	심사 부담	이상옥 성남길 (2007)	· P/L 로 전산제출 후 기본적인 전산심사 · 환급금 지급 후 사후 심사를 통한 환급액 추징으로 가산세 부담 등 불편함 발생
	보관 부담	환급 특례법	· 소요량, 수출증빙, 원재료의 납부세액 증명서류 등 복잡 · 3년~5년까지의 서류의무보관기간
	가격 경쟁력	박현희 (2011)	· WTO 규정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수출지원 수단 · 관세환급이 수출가격을 낮춰 수출을 증대시키는 역할
		최해범 (2007)	· 수출용원재료의 조세부담 경감, 완제품 가격상승요인 제거 · 수출지원에 기여

2.5.1 만족도

이재길(2005)은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여러 과정변수들이 제도 결과의 목표달성으로서의 만족도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의 형성단계·운영단계·산출단계와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황분석에서 공무원과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의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관세환급제도 종합만족도에서 제도평가 종합 만족도에서 수요자(기업)가 공급자(세관)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개별환급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의 다양성 및 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다환급 및 부당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재료의 관세율 인하와 소요량 확인을 위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5.2 자금부담

사전 면세나 세율이 무관세가 아닐 경우, 해외공급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납부한 후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출 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비용이 기업의 자금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박점규(2009)는 개별환급의 경우 2008년 기준 세금 납부에서 환급까지 57.1일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증가요인으로 관세환급제도의 목적인 수출지원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재길(2005)은 관세환급제도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 수입 및 납부에서 환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이 기간의 금융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환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고 하였다.

2.5.3 작성부담

개별환급제도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작성,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게 되는데[13] 소요량의 계산은 수출물품명, 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등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요량 계산 후 관세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14]

박점규(2009)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상당히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고, 일부 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른 서류에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재길(2005)은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납세사실, 소요량, 수출증명서류 등 신청 서류의 작성 및 구비가 곤란하고, 환급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관련서류의 구비 미흡으로 환급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2.5.4 처리편리

관세환급 업무의 처리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환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관은 전산을 통하여 통지, 승인을 진행한다. 전자제출로 인해 대부분 서류의 제출은 P/L (paperless) 처리되지만 전산으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서류제출의 대상인 경우에는 FAX, 우편 등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15]

이상옥·성남길(2007)은 2003년 7월 1일부로 기존 EDI 방식으로 환급 신청 후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과 환급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던 방식

13) 환급특례법 제10조 1항 (환급금의 산출 등).
14)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소요량의 계산 등).
15) 환급특례법 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제10조 (P/L환급신청의 처리).

에서 서류제출 없이 환급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환급금 지급이 더 신속화 되었다고 하였다.

2.5.5 업무신속

관세환급 신청서의 접수부터 환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업무 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3일 이내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환급신청자는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 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세관장은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 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16]

이상옥·성남길(2007)은 관세 환급금은 환급 신청 접수 후 신속하게 심사 후 환급금의 지급이 결정되는데, 2006년 기준 당일처리가 신청건수의 85.3%가 P/L(paperless)로 신고 되어 당일 결정되고, 76.4%가 당일 지급되며, 늦어도 하루 후 환급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2.5.6 심사부담

환급심사는 관세환급 신청 접수 후 이루어지는 전산심사나 서류 심사 그리고 환급금 지급 후 필요 시 진행하는 사후심사가 있다. 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 및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금 전 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환급 전 심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소요량 산출 등의 특수성으로 과다환급이나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거나, 신고된 소요

1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량 계산서대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환급 후 심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7]

<표 2-8>는 환급액 지급 후 사후 심사로 인해 추징실적을 나타낸다. 이상옥·성남길(2007)은 P/L(paperless)로 전산제출 후 기본적인 전산심사로 환급액의 정당 여부와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지급한 후 사후 심사를 통해 환급액 추징으로 인한 환급신청인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불편함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표 2-8> 관세환급액 및 과다환급 추징 실적(2005~2013)

년도	관세환급액(억 원)	과다환급 추징액(억 원)	추징액 비율(%)
2005	23,384	163	0.70
2006	24,429	183	0.75
2007	24,360	208	0.85
2008	28,162	265	0.94
2009	32,344	528	1.60
2010	40,187	820	2.00
2011	49,576	355	0.70
2012	51,469	564	1.10
2013	43,207	417	0.90

출처 : 관세연감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2.5.7 보관부담

환급신청 관련 서류의 보관과 제출에 관해서는 관세환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인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및 수출입 제 증명서 등은 통상적으로 3~5년 동안 의무 보관을 하도록 환급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류의 보관기간 동안 언제든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문서가 아닌

17)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급 전 심사).

전자매체에 보관이 가능하여 문서 보관 장소의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지만 전자매체의 분실 우려와 고장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표 2-9>와 같이 환급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소요량계산 근거 서류 및 계산내역, 수출입 관련 서류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 서류의 보관 기간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어 서류 보관 업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표 2-9> 환급신청 관련 서류 및 보관기간

서류	관련 서류	보관기간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따른 공급물품별 단위실량 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등 가목의 산출 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환급신청일부터 5년
내국신용장 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기납증 발급일부터 3년
수출 사실 확인 서류	일반 유상수출 - 수출신고필증	환급신청일부터 3년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필증, 평세증, 기납증 및 분증	환급신청 사용일부터 3년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 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	환급신청 사용일부터 3년

출처 : 환특법 시행령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9조(환급 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2.5.8 가격경쟁력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금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18]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목적처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박현희(2011)은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촉진 정책 중 하나로, WTO 규정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유용한 간접적인 수출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관세환급액이 많을수록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관세환급이 수출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가격은 수출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해범(2007)은 관세환급은 생산세와 같은 개념으로 수출용원재료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완제품의 가격상승요인을 제거해 주며 수출지원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18) 환급특례법 제1조 (목적).

제3장 관세환급과 FTA특혜관세 수입 현황

제1절 관세환급 현황

3.1.1 수입징수 실적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의 규모도 작아 원자재를 수입한 후 제조 및 가공을 통해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1967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가 1988년 천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4년 1조 1,709억 달러로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3-1>을 보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입금액이 증가하여왔다. 물론, 경제의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소비를 위한 수입물품도 많이 증가하였지만,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역시 증가하였으며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총 수입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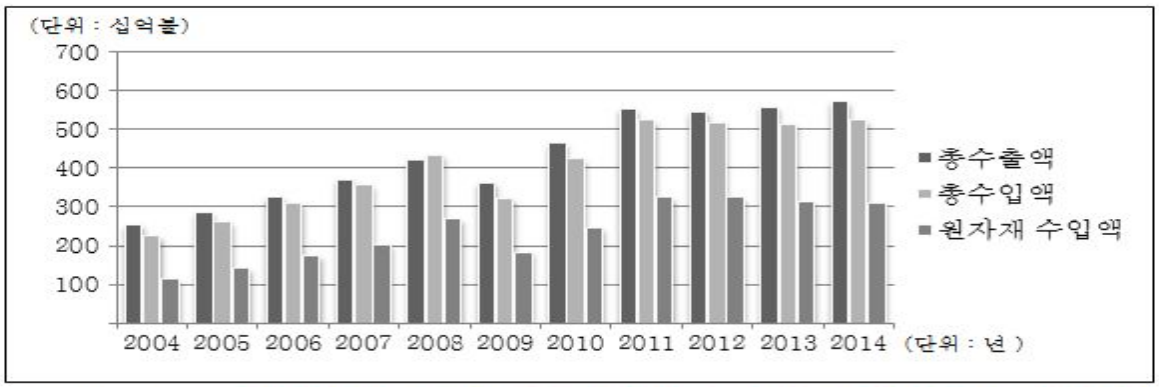

< 그림 3-1> 우리나라 총 수출입 및 원자재 수입 추이(2004~2014)[19]

19)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는 증가하였다. <표 3-1>을 보면, 2004년 관세는 6조3천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11조원을 징수하였다. 2011년 이후 수입액이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관세는 전체적으로 줄어 2014년 8조7천억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관세 및 부가세의 합계 중 관세 비중은 2004년 21.1%에서 2014년 16.7%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2011년 한-EU FTA와 2012년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부분적으로 감소된 품목으로 인해 관세율이 낮아져 수입액이 증가하였지만 관세액이 줄어들었고 징수되는 관세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FTA로 인하여 납부하는 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환급액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부가세의 경우 2004년 23조 6천억 원을 징수하였고 점점 증가하여 2011년 48조원을 징수한 이후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관세 및 부가세의 합계 중 부가세 비중은 2004년 78.9%에서 2014년 83.3%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관세와 달리 부과세의 경우 수입과세가격의 10%로 FTA 협정세율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관세 품목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처럼 증가 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 관세 및 부과세 징수 실적과 비중 변화(2004~2014)

(단위 : 천억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관세	63	65	69	74	88	92	107	110	98	106	87
부가세	236	262	263	287	386	344	403	480	494	484	436
합계	299	327	331	361	474	435	510	589	592	590	523
관세 비중	21.1	19.9	20.7	20.5	18.5	21.1	20.9	18.6	16.6	17.9	16.7
부가세 비중	78.9	80.1	79.3	79.5	81.5	78.9	79.1	81.4	83.4	82.1	83.3

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2004년 증가하던 관세 및 부가세 금액 및 비중이 2011년 이후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수입액은 비슷하나 관세의 징수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수입업체에게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이므로 FTA의 효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RCEP, TPP 등 메가 FTA 체결로 인해 수입관세율이 낮아져 수입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한 관세철폐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전히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원책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1.2 관세환급 실적

수출입액이 증가하면서 관세환급액도 증가하였다. <그림 3-2>에서 2004년 2조 4,895억 원에서 2014년 4조 8,435억 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개별환급 중 소요량환급은 2004년 2조 1,149억 원에서 2014년 4조 1,45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원상태 환급은 2,437억 원에서 4,56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간이정액환급액 역시 2004년 1,309억 원에서 2,41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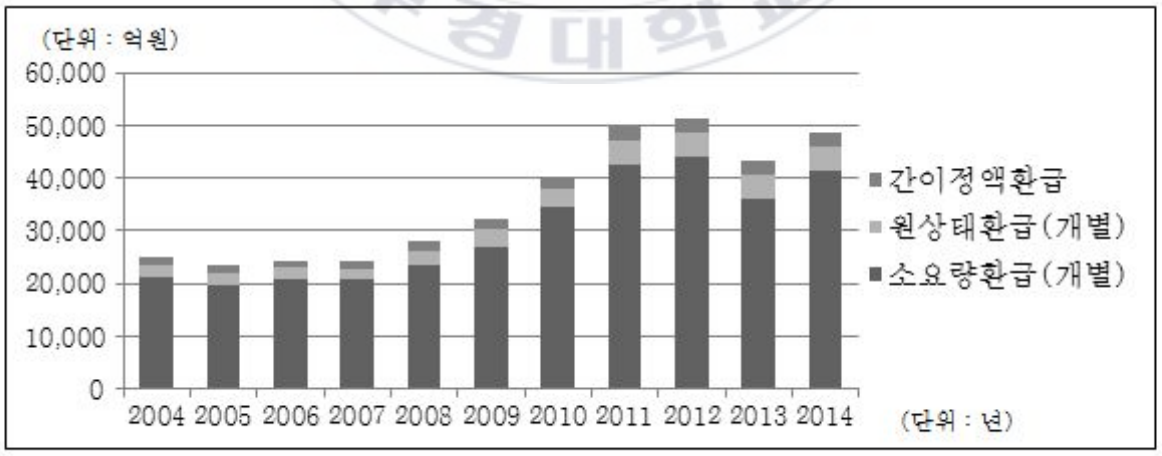

<그림 3-2> 관세환급방법에 따른 환급액 추이(2004~2014)[20]

20) 관세청 세원심사과.

하지만 <그림 3-3>에서 전체 환급업체의 수는 2004년 17,098개에서 지난 10년 간 증가 후 감소하여 2014년 17,090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별환급 업체의 경우 8,847개에서 점점 감소해 2014년 현재 7,724개이고, 반면에 간이정액환급 업체는 9,990개에서 10,648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특성 차이에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의 증가가 둔화되며 감소하는 반면, 활용하기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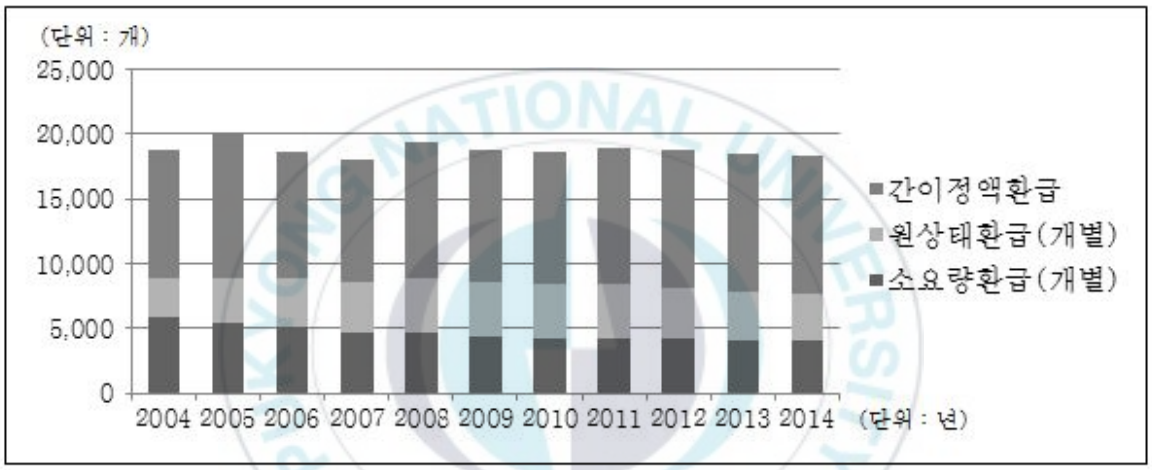

<그림 3-3> 관세환급방법에 따른 환급업체수 추이(2004~2014)[21]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출액과 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징수액과 관세환급액 또한 증가하였다. 아래 <표 3-2>는 관세징수액 중 환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실제 징수된 관세액은 수출용 원재료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용되는 자본재와 소비재 물품에 대해서도 납부된 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그림 3-1>에서 총수입액 중 원자재 수입액이 50~60%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보면 환급률이 30~50% 정도인 것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1) 관세청 세원심사과.

물론, 수출제품이 실제 원재료로 수입되어 완제품 또는 중간재로 생산되는 공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그 해에 수입되어 그 해에 수출되고 그에 따라 바로 관세를 환급 받았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기의 <표 3-2>를 통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환급률을 보았을 때, 평균 환급률이 40.8%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이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2>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중 변화(2004~2014)

(단위 : 천억 원,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관세액	63	65	69	74	88	92	107	110	98	106	87	958
환급액	25	23	24	24	28	32	40	50	51	43	48	390
비중	39.4	36.0	35.6	32.9	32.1	35.3	37.7	45.1	52.4	40.9	55.5	40.8

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제2절 FTA 특혜관세 수입 현황

3.2.1 FTA 특혜관세 수입 실적

FTA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의 수입은 일반수입과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수입이 아닌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할 경우,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세금을 면세 받거나 기존보다 적게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3-3> 대 FTA 협정국 총 수입액 및 협정관세 적용 실적(2008~2013)*

(단위 : 백만 불,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FTA 총 수입액	43,403	37,767	59,563	96,075	166,626	170,985
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액	16,143	11,632	18,912	31,857	62,019	70,627
FTA 협정관세 적용 비율	37.2	30.8	31.8	33.2	37.2	41.3

* 2008년 이전은 실적이 적어 한-ASEAN FTA 이후부터 반영하였고, 2014년의 자료는 2015년 관세연감 자료가 발행 전이어서 반영되지 않음

출처 : 관세연감.

<표 3-3>에서 보면, ASEAN과의 FTA 발효 다음해인 2008년 43,403 백만 불이었던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2011년 EU,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로 인하여 96,075 백만 불, 166,626 백만 불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금액도 2008년 16,143 백만 불에서 2011년 31,857 백만 불, 2012년에는 62,019 백만 불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FTA 특혜관세 적용비율은 2008년 37.2%에서 2013년 41.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3.2.2 FTA 특혜관세 수출입 활용률

FTA 수출입 활용률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FTA 활용률을 의미하며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입금액 대비 실제로 우리나라 또는 협정 상대국에서 특혜(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된 물품의 수입금액 비율을 뜻한다. FTA 수출입 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FTA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3-4> FTA 협정별 수출 활용률(2005~2014)

(단위 : %)

협정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칠레(2004.04.01)*	86.4	99.2	96.4	97.1	-	85.5	-	75.4	78.9	80.5
EFTA(2006.09.01)*	-	-	-	-	-	-	-	84.9	80.3	79.6
아세안(2007.06.01)**	-	-	1.3	3.5	13.8	29.0	33.1	34.8	36.4	37.0
인도(2010.01.01)	-	-	-	-	-	17.7	35.8	36.5	43.2	56.3
EU(2011.07.01)	-	-	-	-	-	-	65.7	84.0	85.6	85.3
페루(2011.08.01)	-	-	-	-	-	-	61.3	77.8	91.9	90.5
미국(2012.03.15)	-	-	-	-	-	-	-	69.4	77.0	76.2
터키(2013.05.01)	-	-	-	-	-	-	-	-	69.4	72.7

* 칠레, EFTA는 상대국의 실적 자료를 통해 산출되어 상대국에서 제공하지 않은 연도의 활용률은 산출하기 어려움

** 아세안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수치임

출처 : 관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FTA를 활용하여 수출할 경우 직접적인 비용의 절감은 없지만, 상대국의 수입자가 납부해야할 관세 등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3-4>를 보면, FTA 수출은 나라별 FTA 발효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활용률이 85.3%, 76.2% 로 높은 편이며, 아세안, 인도는 37.0%, 56.3%로 최초 활용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편이다. 선진국의 FTA 활용률이 약 60~7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2] 아세안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FTA 수출 활용률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FTA 협정별 수입 활용률(2005~2014)

(단위 : %)

협정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칠레(2004.04.01)	99.6	91.9	83.3	80.0	82.4	94.3	95.8	97.9	98.5	98.3
EFTA(2006.09.01)	-	26.0	38.7	40.7	39.7	43.6	55.7	61.9	41.8	41.6
아세안(2007.06.01)	-	-	8.8	63.1	53.0	68.1	73.8	72.5	74.1	73.8
인도(2010.01.01)	-	-	-	-	-	45.8	53.6	53.9	61.4	67.0
EU(2011.07.01)	-	-	-	-	-	-	47.1	67.6	68.6	66.8
페루(2011.08.01)	-	-	-	-	-	-	52.6	92.0	97.9	89.2
미국(2012.03.15)	-	-	-	-	-	-	-	63.7	68.3	66.0
터키(2013.05.01)	-	-	-	-	-	-	-	-	69.4	64.4

출처 : 관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FTA를 활용하여 수입할 경우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와 부가세 등의 금액을 절감함으로써 제조원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3-5>에서 FTA 수입 활용률은 EFTA와의 FTA를 제외한 나머지는 6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산업구조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22)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2009. **오늘의 세계경제**. **9**(4), 1-7.

제4장 개별환급제도와 FTA특혜관세수입제도 분석

제1절 설문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4.1.1 설문 작성개요

설문지의 작성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 매우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자료와 전문가 대상 파일럿 조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개별환급 활용업체의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특성 및 향후 활용 의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개별환급 활용업체 중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 여부 및 FTA 활용이유와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집단 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4개 요인을 구분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개별환급을 활용하는 업체의 환급액 크기는 매출액이나 구매액 등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수입과 수출의 비중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환급제도의 활용 규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의 구분을 통해 환급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인은 총 14개로 기업의 업력과 기업의 규모, 수출입 실적 및 환급실적과 관련된 것을 설정하여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각 요인의 구분 기준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집단구분을 위한 요인별 분류 기준

분류	요인	분류기준	분류기준 선정 근거
기업 일반	업력 (년)	>= 18 < 18	제조업 평균 수명 (출처 "기업 수명 추정 관점 에서 기업생명표와 생존분석의 비교연구" 최현호, 2015, 석사논문, 고려대학교)
	수출경력 (년)	>= 18 < 18	
기업 규모	종업원 (명)	>= 300 < 300	개정 전 중소기업분류표상 종업원 수 기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대기업 구분 기준
	매출액 (억 원)	>= 800 < 800	2015년 개정 중소기업분류표 제조업 최소 매출액 기준
	구매액 (억 원)	>= 400 < 400	평균 구매액이 매출액 대비 40~60%로 50%를 기준으로 설정
수출입 실적	수출비중 (%)	>= 47 < 47	2012년 우리나라 평균 수출비중
	수출액 (억 원)	>= 98 < 98	2013년 기업 평균 수출금액(852만 불)
	수입비중 (%)	>= 44 < 44	2012년 우리나라 기업 평균 수입비중
	수입액 (억 원)	>= 105 < 105	2013년 기업 평균 수입금액(912만 불)
환급	환급경력 (년)	>= 10 < 10	2005년까지 개별업체 증가하다 이후 감소 2004년부터 FTA 시작
	환급방식	관세사 업체	외부 관세사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사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또는 관세사 신청
	연간 관세납부액 (백만 원)	>= 210 < 210	2013년 기준 관세징수액 105,616억 원 ÷ 수입업체 49,240개 = 2.1억 원
	연간환급액 (백만 원)	>= 100 < 100	개별환급 업체의 대부분인 75%가 1억 원 미만
	환급률 (%)	>= 41 < 41	관세징수 대비 평균 환급률 (2004~2014)

4.1.2 설문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는 업체 중 개별환급을 사용하는 업체(2014년 기준, 4,02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은 세관담당 공무원 및 관세사를 통해 확보한 부산, 울산 및 경남지역 200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입 기업 리스트에서 250개를 추출하는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하였고, 동 지역에 종사하는 관세환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 각각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총 450부 배포하여 91부를 회수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4.1.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2>과 같다. 지역을 보면 부산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22.0%, 서울이 12.1%의 순을 나타냈다. 수출품목의 경우 기계류가 30.8%로 가장 높고, 철강금속제품이 20.9%, 전기전자제품이 11.0%, 농수산물이 11.0%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수입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16.5%, 미국이 14.3%, EU가 14.3% 순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활용여부는 사용하는 업체가 49.5%, 미사용 업체가 50.5%의 응답을 보였다.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지역, 수출품목, 수입국, FTA 특혜수입 여부)

일반적 특성	분류항목	빈도	비율(%)
지역	서울	11	12.1
	경기	9	9.9
	인천	3	3.3
	부산	39	42.9
	울산	1	1.1
	경남	20	22.0
	대구	1	1.1
	경북	5	5.5
	충남	2	2.2
	합계	91	100.0
수출품목	기계류	28	30.8
	화학공업제품	9	9.9
	전기전자제품	10	11.0
	철강금속제품	19	20.9
	섬유류	4	4.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	5.5
	광산물	0	0
	농림수산물	10	11.0
	기타	6	6.6
	합계	91	100.0
주요 수입국	EU	13	14.3
	러시아	1	1.1
	미국	13	14.3
	싱가폴	1	1.1
	인도네시아	3	3.3
	일본	15	16.5
	중국	44	48.4
	칠레	1	1.1
	합계	91	100.0
FTA 특혜관세 수입 활용여부	사용	45	49.5
	미사용	46	50.5
	합계	91	100.0

제2절 개별환급제도 분석

4.2.1. 개별환급제도 활용 기업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표 4-3>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 7가지(자금부담, 작성부담, 처리편리, 업무신속, 심사부담, 보관부담, 가격경쟁력) 및 향후 활용 의지로 구성하여 측정되었다.

<표 4-3> 개별환급제도 만족도, 특성 및 활용의지에 대한 측정 내용 및 기준

구분	측정내용	측정기준
만족도	개별환급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	1 : 매우 만족 5 : 매우 불만족
자금부담	관세 납부 후 환급까지 기간소요에 따른 회사의 자금 운영 부담	1 : 매우 부담된다 5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작성부담	관련 서류와 소요량 계산 등으로 인한 환급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1 : 매우 어렵다 5 : 전혀 어렵지 않다
처리편리	신청, 심사 및 환급 과정이 전자문서로 처리됨으로 인한 편리함	1 : 매우 편리하다 5 : 전혀 편리하지 않다
업무신속	접수부터 환급금의 지급까지 업무 처리 기간의 신속함 (3일 이내)	1 : 매우 신속하다 5 : 전혀 신속하지 않다
심사부담	환급신청에 따른 전산, 서류 심사 및 사후심사 등에 대한 부담감	1 : 매우 부담된다 5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보관부담	관세환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관의 업무 부담	1 : 매우 부담된다 5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가격경쟁력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	1 : 매우 도움이 된다 5 : 전형 도움되지 않는다
활용의지	개별환급제도의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	1 : 매우 그렇다 5 : 전혀 그렇지 않다

<표 4-4> 개별환급제도 활용 기업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

구분	만족도	자금 부담	작성 부담	처리 편리	업무 신속	심사 부담	보관 부담	가격 경쟁력	활용 의지
평균	2.71	3.29	2.42	2.20	2.36	2.25	2.90	2.49	1.97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만족도, 제도의 특성 및 향후 활용의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표 4-4>와 같다.

만족도(2.71)는 만족(2)과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개별환급제도가 수출지원제도로 약 40여 년간 활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 요인 별로 집단을 나누었을 경우 집단 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부담(3.29)은 보통(3)과 부담되지 않는다(4)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를 납부한 후 수출이 완료되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된 관세에 대한 자금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자금부담이 없다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이어서 자금 운영에 여유가 있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납부한 관세만큼 환급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므로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작성부담(2.42)은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내역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급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처리편리(2.20)는 편리(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종이서류 없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를 통해 전자서류로 신청부터 심사 및 환급까지 처리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신속(2.36)은 신속(2)과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환급신청 접수 후 대부분의 지급이 당일에 처리되거나 늦어도 3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속도가 신속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부담(2.25)은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개별환급의 경우 환급신청서 작성이 어렵고 관련 증빙 서류가 많아서 심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로 인해 과다환급 등의 오류가 발견되면 환급 받은 세금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므로 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관부담(2.90)은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환급신청서와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및 이와 관련된 수출입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보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관세사나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환급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서류를 전산매체로 보관하여 그 부담의 정도가 다소 덜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 경쟁력(2.49)은 도움이 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제품의 제조원가에 관세를 포함하지만 환급이 가능할 경우 관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제조원가에서 제외 가능하므로 제품의 가격을 낮춰 수출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환급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활용의지(1.97)는 매우 그렇다(1)와 그렇다(2)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활용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도를 사용하여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세공장의 경우 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환급처럼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지만 보세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이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요인별 집단의 T검정 결과(유의수준<0.01)*

	만족도		자금부담		작성부담		처리편리		업무신속		심사부담		보관부담		가격경쟁력		활용 의지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t값
업력	0.062	-1.893	0.016	2.452	0.119	1.574	0.437	-0.781	0.131	-1.526	0.800	-0.254	0.971	-0.037	0.776	-0.286	0.459	-0.744
수출경력	0.038	-2.104	0.010	2.625	0.101	1.659	0.110	-1.612	0.015	-2.470	0.815	0.234	0.573	-0.566	0.523	-0.641	0.398	0.849
종업원	0.042	-2.061	**0.003**	**3.078**	0.061	1.895	0.230	-1.209	0.644	-0.464	0.437	-0.781	0.590	0.540	0.029	-2.221	0.172	-1.377
매출액	**0.004**	**-2.976**	**0.000**	**4.525**	0.021	2.349	0.302	-1.038	0.951	0.062	0.525	-0.638	0.501	-0.676	0.036	-2.143	**0.003**	**-3.047**
구매액	**0.005**	**-2.910**	**0.000**	**4.456**	0.077	1.791	0.276	-1.096	0.817	0.233	0.331	-0.978	0.194	-1.309	0.049	-2.006	0.026	-2.263
수출비중	0.022	-2.340	0.750	-0.320	0.434	0.785	0.013	-2.527	0.185	-1.335	0.974	-0.032	0.475	0.717	0.181	-1.350	0.850	-0.190
수출액	**0.000**	**-4.199**	**0.000**	**5.369**	**0.007**	**2.754**	0.132	-1.520	0.020	-2.375	0.655	0.449	0.827	-0.219	0.121	-1.584	0.466	-0.732
수입비중	0.638	0.472	0.206	-1.274	0.419	0.812	0.184	-1.340	0.398	0.689	0.969	0.038	0.659	-0.444	0.015	-2.493	0.099	-1.668
수입액	0.012	-2.580	**0.000**	**4.631**	0.036	2.129	0.028	-2.230	0.603	-0.523	0.406	-0.835	0.940	0.075	**0.000**	**-4.268**	0.054	-1.955
환급경력	0.013	-2.538	**0.001**	**3.296**	**0.006**	**2.791**	0.075	-1.801	0.016	-2.466	0.818	0.231	0.373	0.896	0.180	-1.353	0.655	-0.448
환급방식	**0.001**	**3.535**	0.023	-2.319	0.166	-1.396	0.128	1.538	0.141	1.484	0.476	-0.716	0.765	0.300	0.601	0.525	0.027	2.242
연간 관세납부액	**0.003**	**-3.057**	0.142	1.481	**0.002**	**3.185**	0.145	-1.471	0.082	-1.758	0.083	1.753	0.906	0.118	**0.002**	**-3.194**	0.683	-0.409
연간환급액	**0.000**	**-4.761**	0.035	2.144	**0.004**	**2.927**	**0.002**	**-3.174**	**0.004**	**-2.960**	0.252	1.152	0.737	0.337	**0.001**	**-3.478**	0.263	-1.126
환급률	0.032	-2.176	0.460	0.742	0.591	0.539	**0.003**	**-3.068**	0.072	-1.819	0.861	-0.176	0.469	0.727	0.524	-0.640	0.648	-0.458

* 음영이 표시된 부분의 값은 유의수준 0.01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4-6>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요인별 집단의 인식 차이*

요인	집단 구분	N	만족도	자금 부담	작성 부담	처리 편리	업무 신속	심사 부담	보관 부담	가격 경쟁력	활용 의지
업력 (년)	>= 18	59	2.58	3.47	2.53	2.15	2.27	2.24	2.90	2.47	1.93
	< 18	32	2.97	2.94	2.22	2.28	2.53	2.28	2.91	2.53	2.03
수출경력 (년)	>= 18	44	2.50	3.57	2.59	2.07	2.16	2.27	2.84	2.43	2.02
	< 18	47	2.91	3.02	2.26	2.32	2.55	2.23	2.96	2.55	1.91
종업원(명)	>= 300	35	2.46	**3.69**	2.66	2.09	2.31	2.17	2.97	2.26	1.86
	< 300	56	2.88	**3.04**	2.27	2.27	2.39	2.30	2.86	2.64	2.04
매출액 (억 원)	>= 800	49	**2.45**	**3.69**	2.63	2.12	2.37	2.20	2.84	2.31	**1.80**
	< 800	42	**3.02**	**2.81**	2.17	2.29	2.36	2.31	2.98	2.71	**2.17**
구매액 (억 원)	>= 400	50	**2.46**	**3.68**	2.58	2.12	2.38	2.18	2.78	2.32	1.84
	< 400	41	**3.02**	**2.80**	2.22	2.29	2.34	2.34	3.05	2.71	2.12
수출비중 (%)	>= 47	44	2.48	3.25	2.50	2.00	2.25	2.25	2.98	2.36	1.95
	< 47	47	2.94	3.32	2.34	2.38	2.47	2.26	2.83	2.62	1.98
수출액 (억 원)	>= 98	61	**2.44**	**3.64**	**2.61**	2.11	2.23	2.28	2.89	2.38	1.93
	< 98	30	**3.27**	**2.57**	**2.03**	2.37	2.63	2.20	2.93	2.73	2.03
수입비중 (%)	>= 44	39	2.77	3.13	2.51	2.08	2.28	2.26	2.85	2.23	1.85
	< 44	52	2.67	3.40	2.35	2.29	2.42	2.25	2.94	2.69	2.06
수입액 (억 원)	>= 105	44	2.45	**3.75**	2.64	2.02	2.32	2.18	2.91	**2.11**	1.84
	< 105	47	2.96	**2.85**	2.21	2.36	2.40	2.32	2.89	**2.85**	2.09
환급경력 (년)	>= 10	52	2.50	**3.58**	**2.65**	2.08	2.19	2.27	2.98	2.38	1.94
	< 10	39	3.00	**2.90**	**2.10**	2.36	2.59	2.23	2.79	2.64	2.00
환급방식	관세사	34	**3.15**	2.97	2.24	2.35	2.50	2.18	2.94	2.56	2.15
	업체	57	**2.46**	3.47	2.53	2.11	2.28	2.30	2.88	2.46	1.86
연간관세납부액(백만 원)	>= 210	56	**2.48**	3.41	**2.66**	2.11	2.25	2.36	2.91	**2.27**	1.95
	< 210	35	**3.09**	3.09	**2.03**	2.34	2.54	2.09	2.89	**2.86**	2.00
연간환급액 (백만 원)	>= 100	56	**2.38**	3.46	**2.64**	**2.00**	**2.18**	2.32	2.93	**2.25**	1.91
	< 100	35	**3.26**	3.00	**2.06**	**2.51**	**2.66**	2.14	2.86	**2.89**	2.06
환급률(%)	>= 41	54	2.54	3.35	2.46	**2.00**	2.24	2.24	2.96	2.44	1.94
	< 41	37	2.97	3.19	2.35	**2.49**	2.54	2.27	2.84	2.57	2.00

* 음영이 표시된 부분의 값은 유의수준 0.01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4.2.2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요인별 집단의 인식 차이

<표 4-4>에서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표 4-5>와 <표 4-6>을 통해 개별환급제도의 활용 기업을 14개의 요인별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는 t 값이 2.58보다 크고 t의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종업원

종업원은 중소기업 분류 기준 개정 전 2014년까지의 중소기업분류 기준인 상시 근로자 인원 수 300명을 기준으로 하여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300명 이상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자금부담은 t값이 3.078, t의 유의확률이 0.00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보통(3)과 부담되지 않는다(4) 사이의 평균값을 보였고 종업원 300인 이상인 집단(3.69)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집단(3.04)보다 자금이 덜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기업의 규모의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자금 규모가 차이가 있으므로 자금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며, 300인 미만 집단에서도 보통(3)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 후 돌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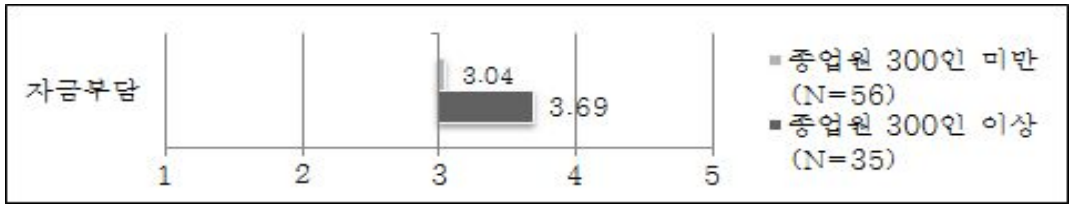

<그림 4-1> 종업원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2) 매출액

매출액은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분류표상 제조업종의 매출 800억 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중견 이상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만족도는 t값이 -2.976, t의 유의확률 0.004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매출액 800억 원 이상인 집단(2.45)은 800억 원 미만인 집단(3.02)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두 집단은 만족(2)과 불만족(4)의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관세환급 업무 담당자의 유무나 관세 납부액 및 환급액의 절대적인 크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의 집단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금부담은 t값이 4.525, t의 유의확률이 0.00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출액 800억 원 이상인 집단(3.69)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800억 원 미만인 집단(2.81)은 부담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견이상의 기업은 자금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관세의 비중이 작지만 중소기업은 납부하는 관세의 크기에 상관없이 운영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의지는 t값이 -3.047, t의 유의확률이 0.00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향후 활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매출액 800억 원 이상인 집단(1.80)이 800억 원 미만인 집단(2.17)보다 상대적으로 활용 의지가 강하였다. 향후 활용 의지가 두 집단 모두 높은 것은 개별환급만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보세공장으로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보세공장 전환에 대한 준비에 따른 인력이나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기존에 활용하던 환급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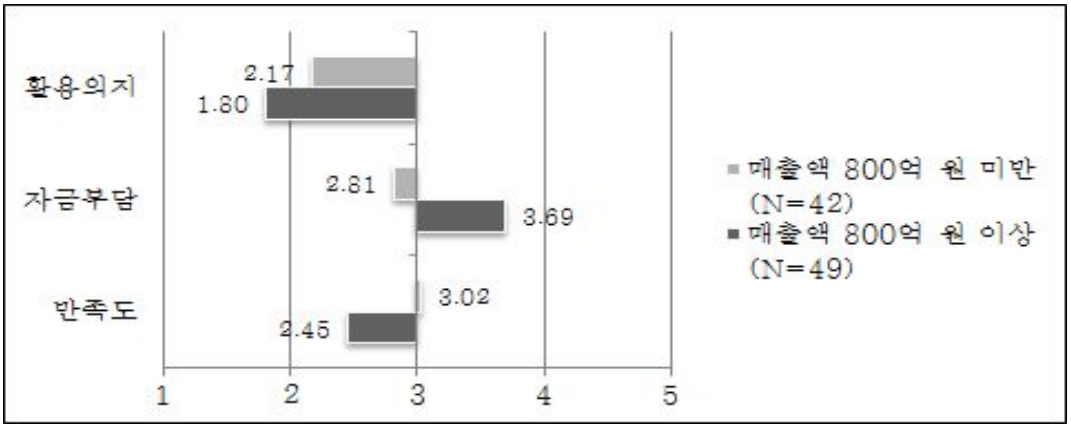

<그림 4-2> 매출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3) 구매액

구매액은 원재료 매입비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매출의 40~60%로 매출액 800억 원의 50%인 400억 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만족도는 t값이 -2.910, t의 유의확률이 0.00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매액 400억 원 이상인 집단(2.46)이 400억 원 미만인 집단(3.02)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두 집단은 상반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구매액은 매출액의 비율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구매액의 크기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환급업무 담당자의 유무나 관세 납부액 및 환급액의 절대적인 크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금부담은 t값이 4.456, t의 유의확률이 0.00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매액 400억 원 이상인 집단(3.68)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와 반대로 구매액 400억 원 미만인 집단(2.80)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매액이 큰 기업은 관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구매액이 작은 기업은 관세가 상대적으로 많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부담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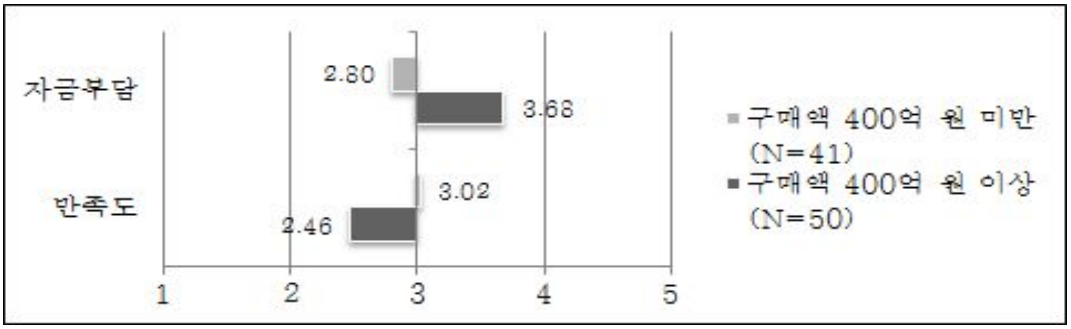

<그림 4-3> 구매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4) 수출액

수출액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출액(852만 불, 약98억 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만족도는 t값이 -4.199, t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출액 98억 원 이상인 집단(2.44)은 만족의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98억 원 미만인 집단(3.27)은 불만족의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개별환급은 수출신고서나 반입확인서 등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실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소요된 원자재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출액이 클수록 환급액이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출액의 집단에 따라 상반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금부담은 t값이 5.369, t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출액 98억 원 이상인 집단(3.64)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고 98억 원 미만인 집단(2.57)은 부담스럽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수출액이 많을수록 환급으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금부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작성부담은 t값이 2.754, t의 유의확률이 0.00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수출액 98억 원 이상인 집단(2.61)이 98억 원 미만인 집단(2.03)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많을수록 환급신청 건수나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환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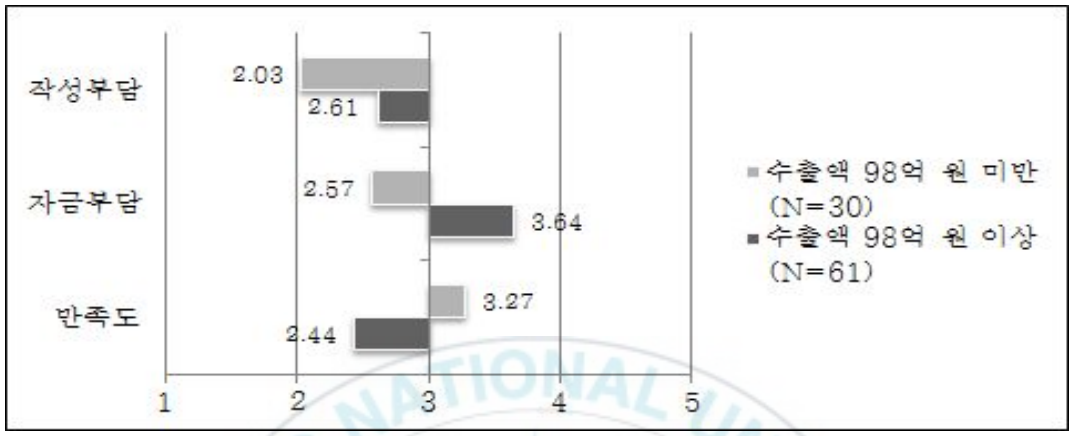

<그림 4-4> 수출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5) 수입액

수입액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평균 수입금액(912만 불, 약105억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자금부담은 t값이 4.631, t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입액 105억 원 이상인 집단(3.75)은 보통(3)과 부담되지 않는다(4) 사이의 의견을 보이고 105억 원 미만인 집단(2.85)은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입액이 더 많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이 많은 기업이 자금부담을 덜 느끼는 이유로 첫째,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부담의 정도가 덜 할 수 있고 둘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경쟁력은 t값이 -4.268, t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도움이 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수입

액이 105억 원 이상인 집단(2.11)이 105억 원 미만인 집단(2.85)보다 가격경쟁력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만큼 관세를 돌려받는다. 따라서 수입액이 적은 집단은 납부하는 관세가 적다 보니 환급액도 적지만 현재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관세사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다 보니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환급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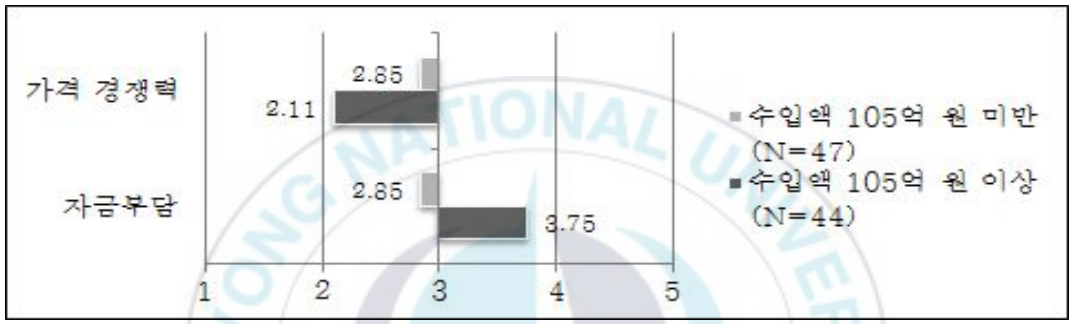

<그림 4-5> 수입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6) 환급경력

FTA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개별환급업체는 2005년 이후로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여 환급경력을 10년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자금부담은 t값이 3.296, t의 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환급경력이 10년 이상인 집단(3.58)은 보통(3)과 부담되지 않는다(4) 사이의 의견을 보이고 10년 미만인 집단(2.90)은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환급경력이 더 많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경력이 높은 집단은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금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의 경향이 나타났

으며, 경력이 길수록 환급에 대한 업무적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상반된 의견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작성부담의 경우 t값이 2.791, t의 유의확률이 0.006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며, 환급경력 10년 이상인 집단(2.65)이 10년 미만인 집단(2.1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성에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작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두 집단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경력이 높을수록 환급신청서 작성이나 관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작성에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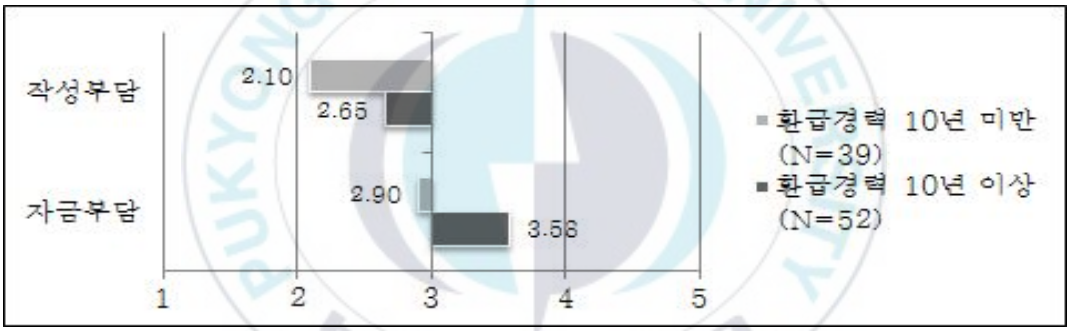

<그림 4-6> 환급경력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7) 환급방식

환급방식은 환급신청서의 작성여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와 관세사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환급방식은 t값이 3.535, t의 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 관세사가 작성(3.15)하는 경우는 보통에서 불만족(4)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며, 업체가 직접 작성(2.46)하는 경우에는 만족(2)에서 보

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환급의 경우 환급대상 기업의 수입, 생산, 수출의 프로세스를 모두 알고 있어서 누락 없이 최대한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사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보가 누락되는지에 대해 관세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직접 하는 경우보다 금액이 작을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작성할 경우 수출 즉시 처리할 수 있지만 관세사가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일정 기간의 수출 실적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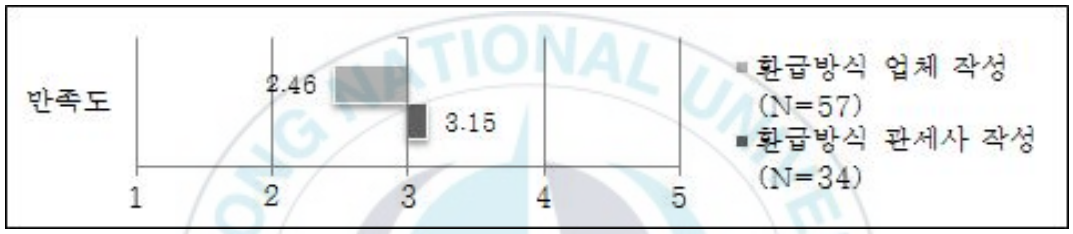

<그림 4-7> 환급방식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8) 연간 관세납부액

연간 관세 납부액은 2013년 총 관세징수액에서 총 수입업체 수를 나누어 평균 관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만족도는 t값이 -3.057, t의 유의확률이 0.00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통(3)을 기준으로 연간 관세 납부액 2.1억 원 이상인 집단(2.48)은 만족(2) 쪽으로 의견을 보였고, 2.1억 원 미만인 집단(3.09)은 불만족(4) 쪽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보통은 납부하는 관세가 많을수록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1억 원 이상 집단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작성부담은 t값이 -3.185, t의 유의확률이 0.00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며 연간 관세납부액

이 2.1억 원 이상인 집단(2.66)은 2.1억 원 미만인 집단(2.03)보다 상대적으로 환급신청서 작성에 부담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원재료를 많이 수입할 경우 환급 시 계산되어야 할 원재료의 종류가 많아서 작성에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되며 2.1억 원 이상의 업체의 경우 대부분 담당자를 두어 환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 느낀다고 생각된다.

가격 경쟁력은 t값이 -3.194, t의 유의확률이 0.00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도움 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연간 관세납부액 2.1억 원 이상인 집단(2.27)이 2.1억 원 미만인 집단(2.86)보다 가격 경쟁력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하는 관세가 많다는 것은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다는 것으로 2.1억 원 이상의 집단이 2.1억 원 미만의 집단보다 개별환급이 가격 경쟁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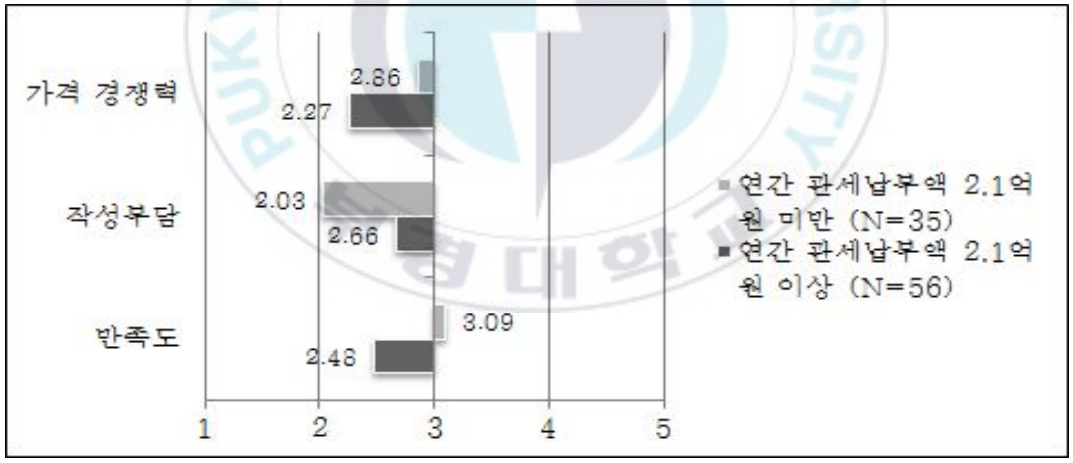

<그림 4-8> 연간 관세납부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9) 연간 환급액

연간 환급액은 개별환급업체의 75%가 1억 미만의 연간 환급액을 받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만족도는 t값이 -4.761, t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간 환급액이 1억 원 이상인 집단(2.33)은 1억 원 미만인 집단(3.26)과 만족과 불만족의 상반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관세환급액이 연간 1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대부분 중견이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환급 담당자가 있어 직접 업무를 처리하거나 환급액이 크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1억 원 미만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환급액도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부담은 t값이 2.927, t의 유의확률이 0.0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부담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환급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부담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나, 연간 환급액 1억 원 이상인 집단(2.64)이 1억 원 미만인 집단(2.06)보다 덜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의 규모가 큰 곳은 담당자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처리편리는 t값이 -3.174, t의 유의확률이 0.00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편리(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관세환급의 처리 시스템이 편리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연간 환급액 1억 원 이상인 집단(2.00)이 1억 원 미만인 집단(2.51)보다 더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직접 방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느끼지만 환급액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세관과의 환급업무를 직접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1억 원 미만인 기업보다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무신속은 t값이 -2.96, t의 유의확률이 0.0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신속(2)과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환급신청 후 세관의 업무처리가 신속하다 느끼고 있었다. 연간 환급액 1억 원 이상인 집단(2.13)이 1억 원 미만인 집단(2.66)보다 더 신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

부분 P/L(paperless) 진행으로 전산심사로 3일 이내 처리되나 전산으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서류심사로 전환된다. 환급액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환급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기존과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전산심사에서 완료되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반면에 1억 원 미만의 환급 신청이 많지 않거나 새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심사로 전환되어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신속하다고 느낄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은 t값이 -3.478, t의 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도움이 된다(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며, 연간 환급액 1억 원 이상인 집단(2.25)이 1억 원 미만인 집단(2.89)보다 가격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환급을 많이 받을수록 제품의 제조원가가 낮아져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1억 원 미만의 업체는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제조원가를 낮추는데 반영되는 환급액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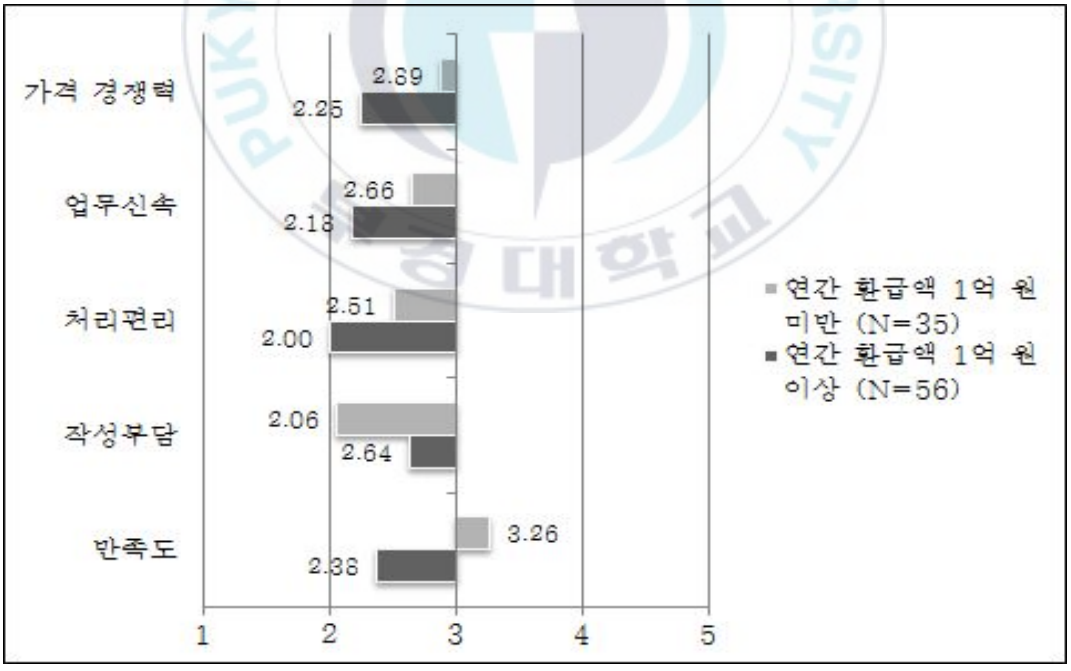

<그림 4-9> 연간 환급액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10) 환급률

환급률은 최초 한-칠레 FTA 발효 때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환급률인 41%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처리편리는 t값이 -3.068, t의 유의확률이 0.00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편리(2)와 보통(3) 사이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환급률 41% 이상인 집단(2.00)이 41%미만인 집단(2.49)보다 처리가 더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매출 중 수출의 비중이 높거나 제품 BOM에서 수입원재료의 비중이 높으면 환급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 환급을 많이 받는다면 시스템을 갖추거나 전담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급률 41% 이상인 그룹이 상대적으로 업무 처리가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4-10> 환급률 기준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

4.2.3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상반된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요인

요인별 집단 간의 인식차이에서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 및 활용의지에 대해 동일한 의견 내에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만족도와 자금부담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만족도

만족도는 총 14개 요인 중 6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수출액(2.44 : 3.27), 환급방식(3.15 : 2.46), 연간 관세납부액(2.48 : 3.09), 연간환급액(2.38 : 3.26)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만족과 불만족의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수출액이 98억 원 이상일 경우 약간 만족(2.44)의 경향을 보이고, 98억 원 미만일 경우 약간 불만족(3.27)의 경향을 보인다. 수출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납부하였던 관세에 대한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액의 규모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급방식은 관세사에게 환급신청서 작성을 맡겼을 경우 약간 불만족(3.15)를 나타냈으며, 업체 담당자가 직접 자료나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약간 만족(2.46)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업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할 경우 수입과 수출 및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환급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누락부분까지 체크한 후에 환급을 진행할 수 있지만, 관세사의 경우 환급 및 통관 등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나 각 업체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류만으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연간 관세 납부액은 2.1억 원 이상일 때 약간 만족(2.48), 2.1억 원 미만일 경우 약간 불만족(3.09)의 차이가 나타났다. 관세를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큰 업체이고 규모가 클수록 수출의 비중이 높으니 차후 환급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 납부액의 규모가 큰 집단이 오히려 작은 집단보다 개별환급제도에 대해 만족의 경향을 보였다.

연간환급액은 1억 원 이상이 약간 만족(2.38), 1억 원 미만이 약간 불만족(3.26)으로 차이를 보였다. 개별환급액의 대부분은 1억 원 미만의 업체가 총 업체의 76% 정도를 차지하는데, 환급액은 약 9%정도 차지한다. 즉, 1억 원 미만의 업체는 개별환급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족의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1억 원 이상 업체는 24% 정도이며 환급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환급액의 규모가 큰 업체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3]

(2) 자금부담

자금부담은 14개 중 6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매출액(3.69 : 2.81), 구매액(3.68 : 2.80), 수출액(3.64 : 2.57), 수입액(3.75 : 2.85), 환급경력(3.58 : 2.90)에서 부담스럽다와 부담스럽지 않다는 상반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매출액과 구매액은 중소기업 분류에 따른 집단 구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스럽다(2.81)와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은 운영 자금이 중소기업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3.69)는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경우 각각의 금액이 클수록 자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금액이 적을수록 자금이 부담스럽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결국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자금부담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매출액과 수출액이 클수록 기업의 운영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세 납부에 대한 자금 부담이 적고, 구매액과 수입액이 클수록 원자재 구입비 및 관세 등 세금과 관련된 비용들을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것이다.

환급경력의 경우 10년 이상일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고, 10년 이하일 경우에 부담스럽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타났다. 개별환급제도를 오래 사용하였다면 수입원자재 구입 시 납부하는 관세에 대한 환급액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제조원가에 모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관세 등의 납부가 당연시 여겨져 부담스럽지 않다(3.58)의 결과와 10년 이하의 짧은 경력은 자금에 부담이 된다(2.90)는 결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

23)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재호·강성훈 저.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2.4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간 상관관계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 특성 및 활용의지에 대한 전체 평균값 중 만족도는 만족의 의견을 보였으나 예상과 달리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자금부담은 부담된다는 의견이 아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요인 별 구분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통해 만족도와 자금부담에서 요인에 따라 집단 간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 및 활용의지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관계수는 절대값이 0.3이하이면 상관이 거의 없고 0.1~0.3은 약한 상관, 0.3~0.6은 뚜렷한 상관이 있으며 0.7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7>에서 자금부담(-0.470), 가격경쟁력(0.372), 심사부담(-0.347), 업무신속(0.333), 처리편리(0.328)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자금부담이 -0.470으로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금부담은 요인별 집단에 따라 부담된다와 부담되지 않는다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중 자금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부담을 감소시키면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특성 간의 상관관계

		자금 부담	작성 부담	처리 편리	업무 신속	심사 부담	보관 부담	가격 경쟁력	향후 활용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0.470	-0.242	0.328	0.333	-0.347	-0.114	0.372	0.137
	유의확률 (양쪽)	0.000	0.021	0.002	0.001	0.001	0.284	0.000	0.195
	N	91	91	91	91	91	91	91	91

제3절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분석

4.3.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 특성의 차이

제2절을 통해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특성 및 향후 의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중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는 집단과 활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특성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개별환급제도에 대해 분석 시 활용하였던 14개 요인 중 업력, 종업원, 수출경력, 매출액, 수출비중, 수출액, 구매액, 수입비중, 수입액, 환급연수, 연간 관세납부액, 연간 환급액, 환급률 등 총 13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환급방식은 명목척도로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이므로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종업원의 경우 범주형 변수이나 본 분석을 위해 연속형 변수로 변경을 위해 각 업체의 종업원 수를 입력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8>에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집단의 차이는 t 값이 2.58보다 크고 t의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종업원, 연간 관세납부액과 연간 환급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8>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T검정 결과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9%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업력	등분산이 가정됨	1.851	.177	1.611	89	.111	5.90	3.66	-3.74	15.5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608	86.081	.111	5.90	3.67	-3.76	15.57
종업원	등분산이 가정됨	15.812	.000	2.771	89	.007	748.31	270.08	37.41	1459.2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741	45.394	.009	748.31	273.00	14.34	1482.28
수출경력	등분산이 가정됨	5.016	.028	2.159	89	.034	5.14	2.38	-1.13	11.4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51	80.046	.034	5.14	2.39	-1.16	11.45
매출액	등분산이 가정됨	14.101	.000	2.401	89	.018	9728.02	4051.54	-936.46	20392.4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75	44.160	.022	9728.02	4096.65	-1299.50	20755.54
수출비중	등분산이 가정됨	1.088	.300	-.967	89	.336	-5.81	6.01	-21.63	1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68	88.652	.336	-5.81	6.00	-21.62	9.99
수출액	등분산이 가정됨	24.313	.000	2.680	89	.009	4282.81	1598.26	75.87	8489.7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650	44.347	.011	4282.81	1615.98	-66.31	8631.93
구매액	등분산이 가정됨	18.511	.000	2.700	89	.008	5347.55	1980.66	134.05	10561.0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670	44.214	.011	5347.55	2002.68	-43.06	10738.16
수입비중	등분산이 가정됨	7.981	.006	1.105	89	.272	6.23	5.64	-8.61	21.0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108	85.894	.271	6.23	5.62	-8.58	21.04
수입액	등분산이 가정됨	16.730	.000	2.495	89	.014	3316.71	1329.50	-182.81	6816.2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67	44.041	.018	3316.71	1344.35	-302.49	6935.91
환급연수	등분산이 가정됨	1.265	.264	1.093	89	.277	2.21	2.02	-3.12	7.5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091	84.278	.279	2.21	2.03	-3.14	7.56
연간 관세납부액	등분산이 가정됨	26.045	.000	3.126	89	.002	5930.87	1897.27	936.88	10924.8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092	44.246	.003	5930.87	1918.35	767.43	11094.31
연간 환급액	등분산이 가정됨	26.214	.000	2.868	89	.005	2384.63	831.36	196.31	4572.9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837	44.515	.007	2384.63	840.54	122.83	4646.42
환급률	등분산이 가정됨	2.076	.153	-.574	89	.567	-3.64	6.34	-20.34	13.0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73	84.867	.568	-3.64	6.36	-20.39	13.11

<표 4-9>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 기업 특성 차이

	평균		t검정 결과	
	FTA 활용 (N=45)	FTA 미활용 (N=46)	유의수준 (P<0.01)	t값
종업원 (명)	941	193	0.009	2.741
연간 관세납부액 (억 원/년)	64.42	5.11	0.003	3.092
연간 환급액 (억 원/년)	26.72	2.87	0.007	2.837

<표 4-9>에서 종업원에 따른 분석결과는 유의확률이 0.0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값은 2.58보다 큰 2.741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업체의 경우 종업원 수가 평균 941명이고, 미활용업체의 경우 종업원 수가 평균 193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변경 전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따르면 활용업체의 경우 중견기업 이상(300명 이상 ~ 1000명 미만)으로 규모가 큰 업체가 대부분이고 미활용업체의 경우 중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FTA 발효로 인하여 품목의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인하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줄어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기업의 여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수입국이 다양할 수 있고 사후 검증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담당자와 시스템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중국과 같은 FTA 미체결국과 거래하거나 FTA 체결국과 거래하더라도 담당자 없이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사후 검증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자금에 부담이 되더라도 개별환급을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간 관세납부액에 따른 분석결과는 유의확률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으며, t값은 2.58보다 큰 3.092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기업은 평균 64.42억 원의 관세를 납부한 반면 미활용기업은 평균 5.11억 원을 납부하여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 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한 관세는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낮추고자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수출실적 없이 개별환급제도를 통하여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없는 관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제조원가를 줄이고자 이를 활용 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간 환급액에 따른 분석결과는 유의확률이 0.00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값이 2.58보다 큰 2.8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 기업은 평균 26억 원을 환급 받았으나 미활용기업은 평균 2.8억 원을 환급 받아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수출을 전제로 해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수출 사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별환급제도 보다 제조원가 절감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급액의 규모가 크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크면 그만큼 납부하는 관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고자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13개의 변수 중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종업원, 연간 관세납부액, 연간 환급액의 3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를 통해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기업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2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두 제도의 활용 의지 비교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여부에 따라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의지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활용 기업과 미활용기업의 개별환급제도 활용의지 평균과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의지를 비교하였다.

<표 4-10>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의지 비교

분류 기준	집단	N	개별환급제도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평균	유의확률	T값	평균	유의확률	T값
FTA 활용여부	활용	45	1.91	0.389	-0.867	1.80	0.000**	-8.412
	미활용	46	2.02			3.00		

** 는 $p<0.01$, *는 $p<0.05$.

<표 4-10>에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의 구분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는 1.97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의지 2.41보다 높아 개별환급업체들은 향후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활용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해서는 활용업체가 1.80, 미활용업체가 3.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활용업체는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의지가 1.80으로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 1.91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을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사용되지 않은 수입원자재의 관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원산지 물품임이 증명된다면 수출에 상관없이 관세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 특혜관세 수입제

도를 개별환급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활용업체는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가 2.02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의지 3.00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관세의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로 인하여 관세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가 개별환급제도처럼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3.00)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4.3.3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이유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종업원이 많고 관세와 환급액의 규모가 큰 중견 및 대기업으로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향후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다. 따라서 자금부담 감소, 서류간소, 작성간소, 업무비용 절감이라는 항목을 통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 이유를 분석하였다. 자금부담 감소(1.91)는 많이 줄여준다(1)와 줄여준다(2) 사이의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서류간소(2.20)와 작성간소(2.20)는 간소하다(2)와 비슷(3)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업무비용 절감(2.24)의 경우 절감된다(2)와 비슷(3) 사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표 4-1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활용 이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금부담 감소	45	1	4	1.91	0.701
서류간소	45	1	5	2.20	1.036
작성간소	45	1	5	2.20	0.919
업무비용 절감	45	1	5	2.24	0.908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기업의 가장 큰 활용 이유는 자금부담 감소로 나타났다. FTA 발효로 인해 수입 시 납부하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되면 FTA 특혜관세 혜택 분만큼 납부할 세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 환급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금부담 감소가 가장 높은 이유로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서류의 간소, 서류 작성의 간소, 업무비용 절감 순으로 특성도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 이유에 대해 자금부담 감소보다는 낮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활용기업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개별환급제도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은 관세 납부로 인한 자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용의 절감을 위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자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활용기업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개별환급제도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자금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3.4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미활용 이유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미활용하는 업체는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에 비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의지가 낮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미활용 이유를 통해 분석하였다. 미활용 이유는 개별환급제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이해 수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개별환급제도 만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3%,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해 58.7%가 개별환급제도 보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 활용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각 세관, 상공회의소 및 유관기관에서 FTA와 관련된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 내용은 FTA 수출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원재료 수입 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FTA 수입 활용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2>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이해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이 해 수 준	빈도	비율(%)	누적 비율(%)
FTA특혜관세 수입제도를 더 잘 알고 있다	1	2.2	2.2
비슷한 수준	18	39.1	41.3
다소 낮다(조금 모르는 수준)	17	37.0	78.3
상당히 낮다(대부분 모르는 수준)	8	17.4	95.7
전혀 알지 못한다(전혀 모르는 수준)	2	4.3	100.0

(2) 추가 비용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71.7%의 응답자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답하였으며 28.3%가 현재와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실제로 업무 상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 수입 통관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관세사에게 해

당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수입 통관 시 FTA 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통관 비용에 포함되어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한 결과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3>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추가 비용에 대한 응답결과

추가 비용에 대한 응답	빈도	비율(%)	누적 비율(%)
현재와 거의 유사	13	28.3	28.3
추가 비용이 다소 발생(+ 20% 수준 이내)	20	43.5	71.7
추가 비용이 꽤 발생(+ 20~50% 수준)	9	19.6	91.3
추가 비용이 상당히 발생(+ 50~100% 수준)	4	8.7	100.0
매우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 (+ 100% 이상, 현행 대비 2배 이상)	0	0.0	100.0

(3) 추가 업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89.1%의 응답자가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0.9% 만이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FTA특혜관세 수입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상대국 수출자에게 발급받기 위한 활동과 해당 서류의 보관 등의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발생하는 업무가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역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새로운 제도의 활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막연히 업무가 어느 정도 추가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추가 업무에 대한 인식도 활용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4-14>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추가 업무에 대한 응답 결과

추가 업무에 대한 응답	빈도	비율(%)	누적 비율(%)
현재와 거의 유사	5	10.9	10.9
추가 업무가 다소 발생(+ 20% 수준 이내)	23	50.0	60.9
추가 업무가 꽤 발생(+ 20~50% 수준)	14	30.4	91.3
추가 업무가 상당히 발생(+ 50~100% 수준)	4	8.7	100.0
매우 많은 추가 업무가 발생 (+ 100% 이상, 현행 대비 2배 이상)	0	0.0	100.0

(4) 검증 부담

마지막으로 검증부담은 82.6%의 응답자가 개별환급제도의 심사보다 FTA 특혜관세제도의 사후검증이 더 부담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17.4%가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덜 부담스럽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절차상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세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검증도 사후 심사를 통해 이상여부가 발견될 시에 추징을 한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자는 상대국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에만 의존할 뿐 실제로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검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에 이상이 없어 진행되었다면 사후 검증 시 부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가산금 없이 기존의 환급신청서로 추가

환급을 통해 납부세금과 환급금 간의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검증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표 4-15>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검증 부담에 대한 응답 결과

검증 부담에 대한 응답	빈도	비율(%)	누적 비율(%)
FTA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덜 부담	0	0.0	0.0
관세환급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후 검증이 부담	8	17.4	17.4
FTA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조금 더 부담	24	52.2	69.6
FTA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더 많이 부담	12	26.1	95.7
FTA 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매우 많이 부담	2	4.3	100.0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정부는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관세환급제도를 유용한 수출지원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해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환급과 FTA 모두 유용한 수출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환급제도 활용업체의 만족도와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와 FTA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여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 제도 활용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환급업체들은 환급제도를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제도의 만족도 및 특성에 인식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제도 만족도와 자금부담에 대해 집단 간에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 자금부담, 작성부담, 처리편리, 업무신속, 심사부담, 보관부담, 경쟁력, 활용의지 중 심사부담과 보관부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요인별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이 중 만족도와 자금부담의 경우 요인별로 집단 간 상반되는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은 동일한 경향의 답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는 14개 중 6개의 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출액, 환급방식, 연간 관세납부액, 연간환급액으로 구분된 집단에서 만족과 불만족의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자금부

담은 14개 중 6개의 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매출액, 구매액, 수출액, 수입액, 환급경력에서 부담스럽다와 부담스럽지 않다는 상반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관세를 납부 후 환급 받는 기간 동안의 자금부담이 업체의 규모와 환급 경력의 차이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상반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업체들 중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 특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종업원, 연간 관세납부액, 연간 환급액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련 특성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대기업을 대표하는 지표에 평균이 가깝고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지표에 평균을 나타내어 그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업체의 현재 FTA 활용 여부에 따라 향후 개별환급제도 활용의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의지에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기업은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모두 활용할 의지가 높았다. 반면에, 미활용기업은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의지는 높았으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보통(3.00)으로 활용의지에 대한 차이가 컸다.

마지막으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 중 자금부담을 느끼는 경우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를 활용을 통해 관세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자금부담이 가장 높은 음의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 기업은 자금부담감소를 가장 높은 활용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서류간소, 작성간소, 업무비용 절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이 개별환급업체 중 자금에 부담이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FTA 활용 관련 실무교육이나 매뉴얼은 대부분 수출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수출가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FTA 수출활용이 중요하나 FTA 확대로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함에 있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면 관세환급제도와 비교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감소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FTA 사후검증으로 인한 추징 시 기존 환급신청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후 검증의 주체는 상대국 수출자이나 원산지가 부인될 경우 그 책임은 법적으로 혜택을 보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개별환급업체는 추징된 세금을 추가환급으로 회수 가능하나 그에 따른 업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급신청서에 FTA 특혜세율 적용 자재를 포함하여 환급을 받았다면 추징 시 이를 근거로 상계처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자의 사후 검증의 부담을 줄이고 활용을 늘려 업체의 자금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의사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기존 제도의 만족도와 신규 제도의 활용 의사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2차 자료 및 문헌연구 위주로 진행하였으나, 금번 연구는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업체 특성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FTA 특혜 관세 수입제도 활용 의사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활용하던 개별환급제도와 새로운 제도인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을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관세의 절감이라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수입 시 납부할 관세의 면세나 감세를 해 주기 때문에 자금부담감소에 가장 높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감소시켜 활용률을 높이고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교육이 중요하며, 제도를 활용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징 시 개별환급신청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없이 상계처리 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두 제도의 활용이 늘어나 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김영춘(2015).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증진 방향. **관세사지**, 177, 15-26.

김영춘, 성남길, 김정숙(2012).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23-42.

김한성(2009).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9(4), 1-7.

라공우, 이선표, 홍길종(2011).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 13(1), 217-241.

박성용(2013). **보세공장제도와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향상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편광필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박점규(2009).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박현희(2010). 한-EU FTA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논의와 경제적 효과. **통상정보연구**, 12(2), 213-237.

박현희(2011). 수출지원수단으로써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세학회지**, 12(1), 67-80.

손계성, 최창환(2012). 한·중 관세환급제도와 수출촉진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37(5), 327-345.

송선욱(2005).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교토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무역학회지**, 30(3), 217-238.

윤기관(2001). 정액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16(2), 119-143.

이상옥, 성남길(2007). 관세환급제도에서의 환급금지급 및 심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8(4), 55-74.

이서영(2007). 우리나라의 관세환급과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8(3), 69-84.

이서영(2012). 중국의 관세환급이 수출촉진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13(3), 69-86.

이재길(2005).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장근호(2010). 관세유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조세연구**, 10(3), 7-46.

장근호(2012).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29(3), 167-189.

장진명(2007). **자유무역협정체제에서의 관세환급제도 발전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접동상(2014). **한중 수출환급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재완(2011).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2), 27-44.

정재호·이명헌(2002).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강성훈 (2014).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해범(2007).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8(4), 23-39.

하정미(2009).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 단행본 및 기타 자료

관세국경관리연수원(2013). **관세환급(민간)**. 서울:협동문고.

관세관련 법령집 (관세법, 환급특례법, FTA 이행특례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3. 온라인 자료

관세청, www.customs.go.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ww.kctdi.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산업통상자원부 (FTA KOREA), http://www.fta.go.k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수출입 기업의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 만족도와 FTA 특혜관세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수출입 기업의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 만족도와 FTA특혜관세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금번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성실한 응답을 부탁 드립니다.

설문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귀사와 귀하에게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자: 이종용,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부 FTA비즈니스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이정윤,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

연락처: 이종용 (H.P: 010-9636-6226, E-mail: ultraaffair@hotmail.com)

응답자	기업명		소재지(시/도)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E-mail			

PART 1. <기업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설문

1.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2. 귀사의 현재 상시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① 10명 미만 ② 10명~50명 미만 ③ 50~300명 미만 ④ 300~1000명 미만

⑤ 1000명 이상

3. 귀사의 수출 개시 년도는 언제입니까? (년)

4. 귀사의 주요 수출품목(또는 생산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기계류 ② 화학공업제품 ③ 전기전자제품 ④ 철강금속제품 ⑤ 섬유류

⑥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⑦ 광산물 ⑧ 농림수산물 ⑨ 기타 ( )

5. 귀사의 2014년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원)

6 귀사의 2014년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입니까? (%)

7. 귀사의 2014년 **원재료*** 구매액은 얼마입니까? (원)

8. 귀사의 2014년 **원재료*** 구매액 중 해외공급처로부터 구매(수입)되는 비중은 몇 % 입니까?

(%)

9. 귀사의 2014년 해외 **원재료*** 구매(수입)가 가장 많은 국가는 어느 나라 입니까?

( )

***원재료 : 귀사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재료를 뜻하며,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형태로 공급되어 생산에 사용될 경우를 모두 포함**

PART 2. <기업의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의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

1. 귀사는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을 총 몇 년 동안 사용하셨습니까? (　　년)

2. 귀사는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 업무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십니까?

① 사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 신청　② 사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 외부 관세사가 신청
③ 외부 관세사가 신청서 작성 / 신청　④ 기타 (　　)

3. 최근 3년간(2012~2014년) 귀사의 연간 관세 납부액은 얼마입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약　　원)	(약　　원)	(약　　원)

4. 최근 3년간(2012~2014년) 귀사의 연간 관세 환급액은 얼마입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약　　원)	(약　　원)	(약　　원)

5. 귀사는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다음은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설문에 대해 귀사의 의견에 가장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여 주십시오.

6-1) 해외공급처로부터 원재료 수입할 경우 관세 납부 후 환급까지 일정기간(3~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기 납부한 관세가 회사의 자금 운영에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6-2) 관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류(소요량 계산서 및 수출입 제 증명서 등)와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요량 계산이 필요합니다. 귀사는 이러한 **관세환급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　④ 어렵지 않다　⑤ 전혀 어렵지 않다

6-3) 관세환급의 신청, 접수통보, 심사 및 환급 결정 통지에 이르는 모든 업무과정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자문서 처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편리하다 ② 편리하다 ③ 보통 ④ 편리하지 않다 ⑤ 전혀 편리하지 않다

6-4) 관세환급신청서의 접수부터 환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업무 처리 기간(통상적으로 당일~3일 이내)이 신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신속하다 ② 신속하다 ③ 보통 ④ 신속하지 않다 ⑤ 전혀 신속하지 않다

6-5) 귀사는 관세환급신청 접수 후 이루어지는 전산 심사나 서류 심사 그리고 환급금 지급 후 필요 시 진행하는 사후심사 등의 **관세환급심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6-6) 현행제도에서는 관세환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및 수출입 제 증명서 등)를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관기간이 귀사는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된다 ③ 보통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6-7) 귀사는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 활용이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7. 귀사는 향후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PART 3. <기업의 FTA 특혜관세제도 활용>에 관한 설문

1. 귀사는 현재 원재료 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① 적용하고 있다. (2번, 3번 **응답** 후 5번부터 응답)
   ② 적용하지 않는다 (2번, 3번 **생략** 후 4번부터 응답)

2. 귀사의 2014년 해외 원재료 수입액 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비중은 몇 % 입니까? (%)

3. 다음은 **귀사가 해외로부터 원재료 수입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활용과 비교한 질문입니다. 귀사의 의견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3-1) 귀사는 FTA 특혜관세제도가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에 비해, **자금 운영의 부담을 더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환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이후 환급을 통해 회수 (일정기간 소요)
FTA 특혜	수입 시 관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면제

   ① 많이 줄여준다 ② 줄여준다 ③ 비슷 ④ 줄여주지 않는다 ⑤ 전혀 줄여주지 않는다

   3-2) 귀사는 FTA 특혜관세제도가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에 비해, **신청서류가 더 간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환급	관세환급신청서,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및 수출입 제 증명서 등
FTA 특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① 매우 간소하다 ② 간소하다 ③ 비슷 ④ 간소하지 않다 ⑤ 전혀 간소하지 않다

   3-3) 귀사는 FTA 특혜관세제도가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에 비해, **신청서 작성이 더 간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환급	소요량 산정 방법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여 신청서 작성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신청서 작성

   ① 매우 간소하다 ② 간소하다 ③ 비슷 ④ 간소하지 않다 ⑤ 전혀 간소하지 않다

   3-4) 귀사는 FTA 특혜관세제도가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에 비해, **업무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환급	인건비, 환급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데이터 전송료 등 (또는 외부 전문가 위탁 시 수수료 발생)
FTA 특혜	수입통관 시 신청이 되므로, 보통 관세사에게 통관수수료 지급

   ① 매우 절감된다 ② 절감된다 ③ 비슷 ④ 절감되지 않는다 ⑤ 전혀 절감되지 않는다

4. 다음은 현재 **귀사가 해외 원재료 수입 시 FTA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과, 비용/업무/사후검증 등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귀사의 의견에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만 골라 선택해 주십시오.

4-1) FTA 특혜관세제도(특성 및 활용)에 대한 **귀사의 현재 이해 수준은 어떻습니까?**
① 관세환급제도 보다 FTA특혜관세제도를 더 잘 알고 있다.
② 관세환급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③ 관세환급제도에 비해 이해 수준이 다소 낮다. (조금 모르는 수준)
④ 관세환급제도에 비해 이해 수준이 상당히 낮다. (대부분 모르는 수준)
⑤ FTA 특혜관세제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는 수준).

4-2) 귀사가 FTA 특혜관세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경우, 현재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에 소요되는 업무비용(인건비, 전자문서 처리,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 데이터전송 등) 이외로 **얼마나 많은 업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현재와 거의 유사할 것이다.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② 추가 비용이 다소 발생할 것이다. (+ 20% 수준 이내)
③ 추가 비용이 꽤 발생할 것이다. (+ 20~50% 수준)
④ 추가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 50~100% 수준)
⑤ 매우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 100% 이상, 현행 대비 2배 이상)

4-3) 귀사가 FTA 특혜관세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경우, 현재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환급준비, 작성, 신청, 서류보관 등) 이외에, **얼마나 많은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현재와 거의 유사할 것이다. (추가 업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② 추가 업무가 다소 발생할 것이다. (+ 20% 수준 이내)
③ 추가 업무가 꽤 발생할 것이다. (+ 20~50% 수준)
④ 추가 업무가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 50~100% 수준)
⑤ 매우 많은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것이다. (+ 100% 이상, 현행 대비 2배 이상)

4-4) 귀사가 FTA 특혜관세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경우, 현재 관세환급제도(개별환급)의 사후검증과는 별도로 FTA 관련 사후 검증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행 관세환급제도의 사후검증과 비교하였을 때, **FTA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수준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① 관세환급제도 보다 FTA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② 관세환급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후 검증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③ FTA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조금 더 부담될 것이다.
④ FTA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더 많이 부담될 것이다.
⑤ FTA 특혜관세제도 사후 검증이 매우 많이 부담될 것이다.

5. 귀사는 향후 FTA 특혜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